

2026 대학안전관리계획

2026. 02.



❖ 본 계획서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의 '고등교육 기관의 장'이 '대학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우리대학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한라대학교 안전 보건 목표**

-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환경 조성
-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 THE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한라대학교 안전보건 경영 방침**

-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진단하고 전략적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
-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성숙한 안전문화를 구현한다.
- 업무연속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을 통한 대응을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한라대학교 안전보건 메시지**

-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입니다.
- 안전은 어느 특정부서나 특정 구성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함께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관심과 실천이 바탕이 되는 한라대학교만의 성숙한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목 차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1
1. 목표 및 기본방향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3
1. 재난	13
① 자연재난	13
② 사회재난	20
2. 안전사고	22
① 대학 안전사고	22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31
③ 연구실사고	33
3. 감염병 확산	40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40
4. 범죄	47
① 일반범죄	47
② 성범죄	52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56
① 산업재해	56
② 중대재해	63
6. 기타	71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71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73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77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87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90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91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92
[붙임4] 감염병 발생 시 업무연속성계획(BCP) 가이드라인	93
※ [부록1] 긴급상황시 주요 대응/조치사항	121
[부록2]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 요령	122
[부록3] 개인위생 준수 요령	123
[부록4] 감염병 발생시 대응 체계	124
[부록5] 식중독 발생시 대응 체계	126
[부록6] 사이버 공격 발생시 대응 체계	127

《 관련 매뉴얼 및 지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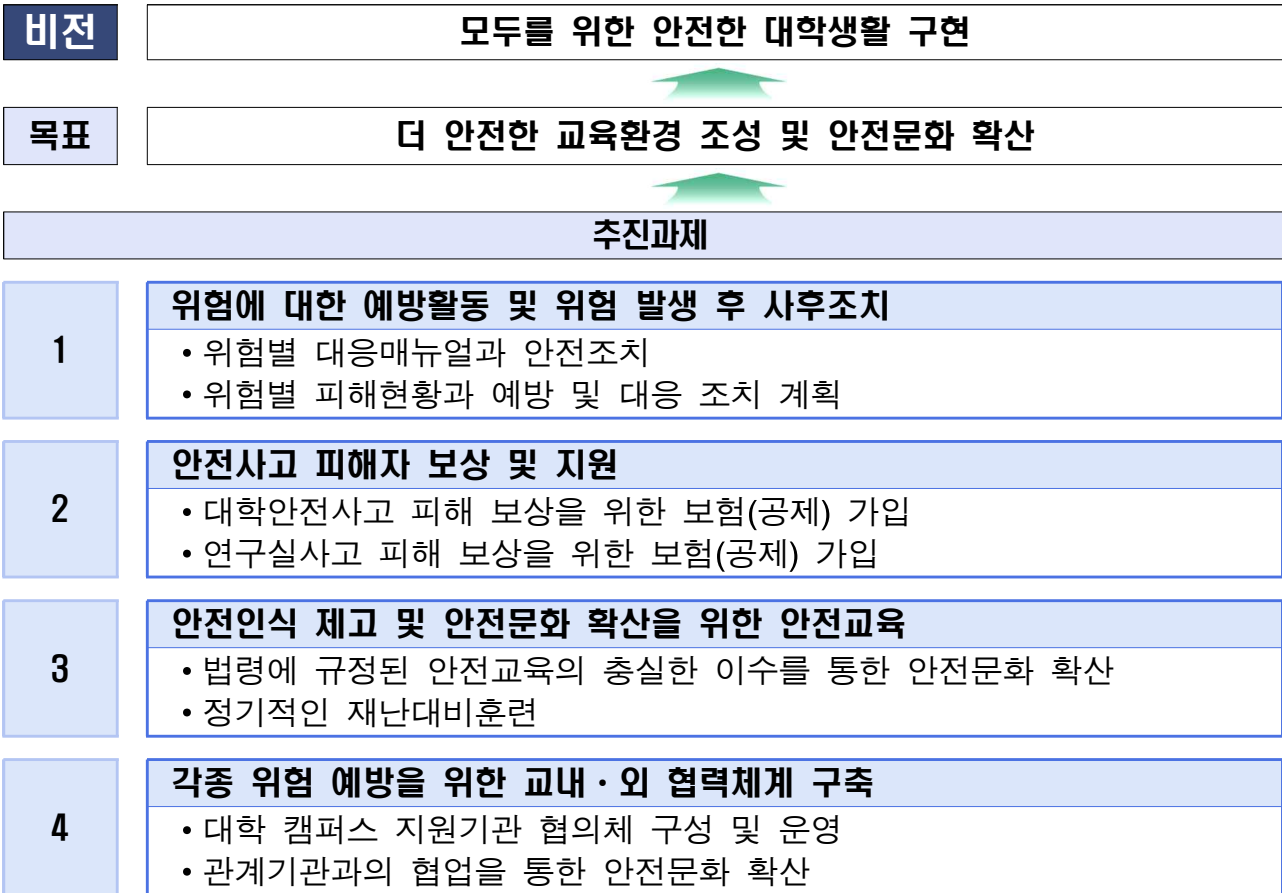
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9. 교육시설안전 인증 신청가이드(교육부)
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교육부)
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13. 2023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1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15. 2022년 중대재해 예방계획(교육부)
16.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 목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 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위험요인별 관련 법률

구분	관련 법률
1. 재난	■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교육시설 안전법」, 「식품위생법」
3. 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4. 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기안전관리법」, 「기계설비법」, 「건축물관리법」
6. 비상사태	■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법」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대학 소속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사업장 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고려하여 이사장 또는 총장의 안전보건 경영 리더십 강조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대학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재난·안전 관련 총괄 업무는 대학별 법정 총괄 재난안전부서(또는 경영책임자 직속 대학 전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인원 확보 노력
 - 재난·안전 분야별 세부 구체적인 업무추진은 대학별 업무분장 부서에서 지정 주관
 - 재난·안전 총괄부서는 대학 주요 관리 업무의 대응 절차 및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
-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 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 연락망 활용

□ 수립 절차

- (계획수립·시행)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예방 활동 및 사안 발생 시 업무분장에 따라 시행
- (계획게시·제출)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은 학교 홈페이지(www.halla.ac.kr)에 게시하고, ‘대학정보공시 항목관리기관(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제출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 현황

□ 일반현황

학교명	한라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대학교	
주소	강원도 원주시 한라대길 28				
전화	033-760-1114	FAX	033-760-1357	홈페이지	www.halla.ac.kr
총장	김응권	총 안전 관리 책임자	재난/산업/중대/비상/학교안전	최준규 (직위:총무처장)	
			감염병/학생안전	김미영 (직위:학생처장)	
			인권	이항수 (직위:인권센터장)	
			외국인 학생 안전	김종하(직위:글로벌부총장)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2026.02.01. 기준)

학생 (명)	학부생	대학원(석사)	합계	비고
	2,557	37	2,594	

교직원 (명)	직원·조교	전임교원	현업업무직원	학생보호인력	산학협력단	합계
	151	101	18	3	19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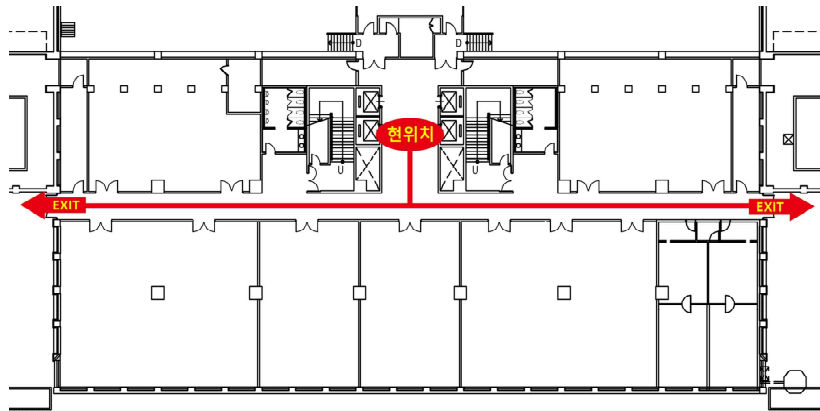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비상대피집결지 위치
Location of emergency assembly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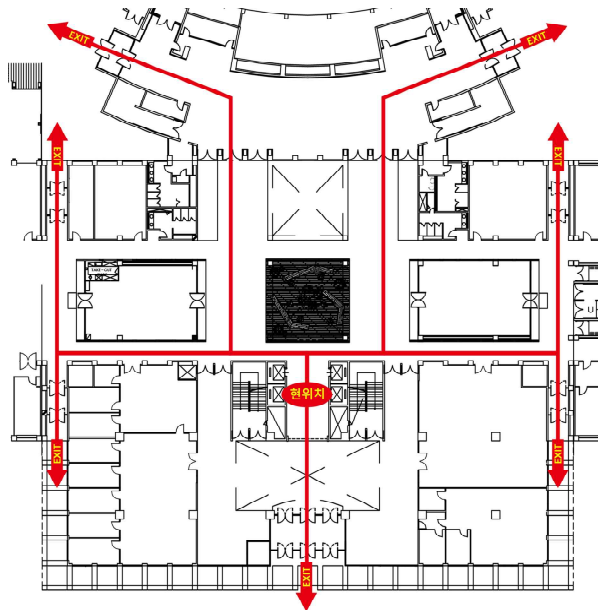
실내 대피소 사진(대강당)

○ 건물별, 층별 대피소 이동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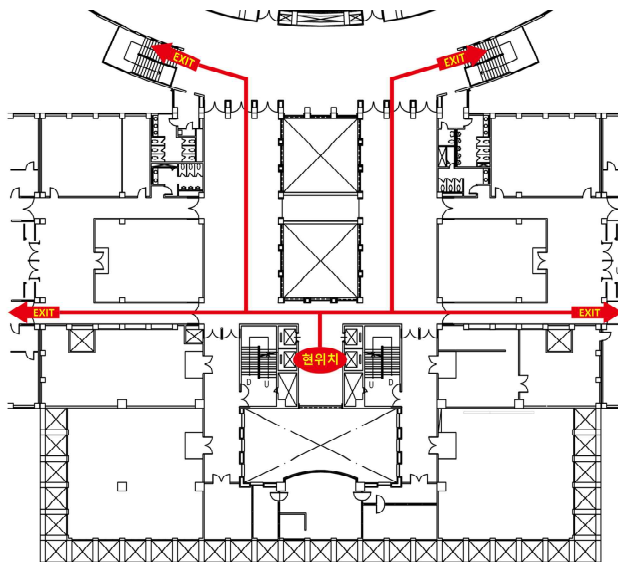
한라관 지하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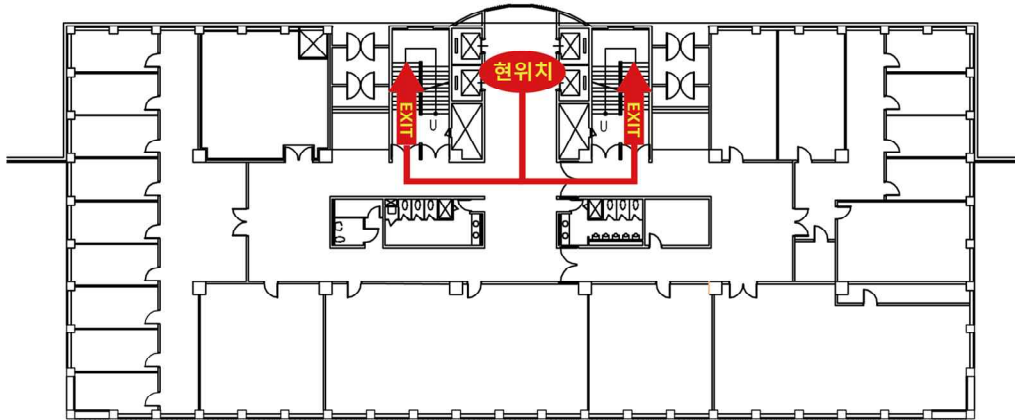
한라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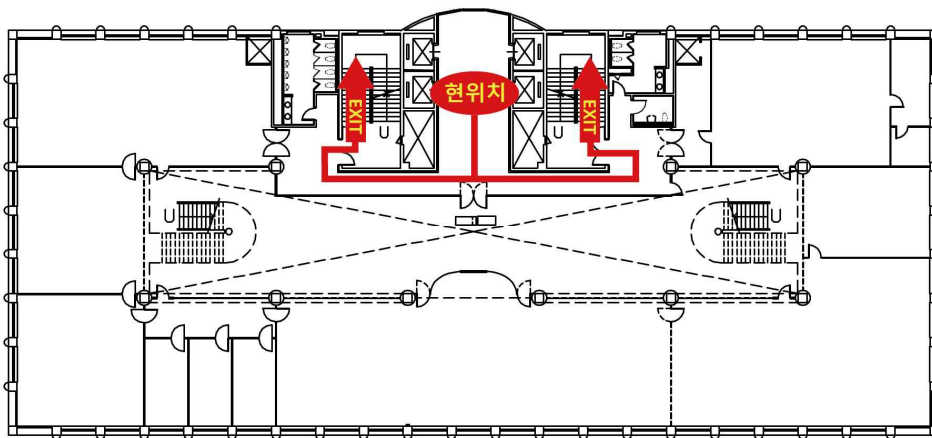
한라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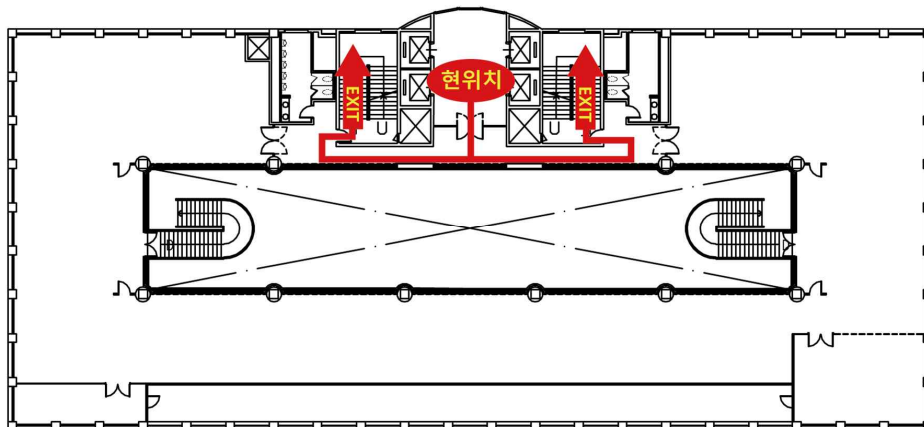
한라관 3층~7층(구조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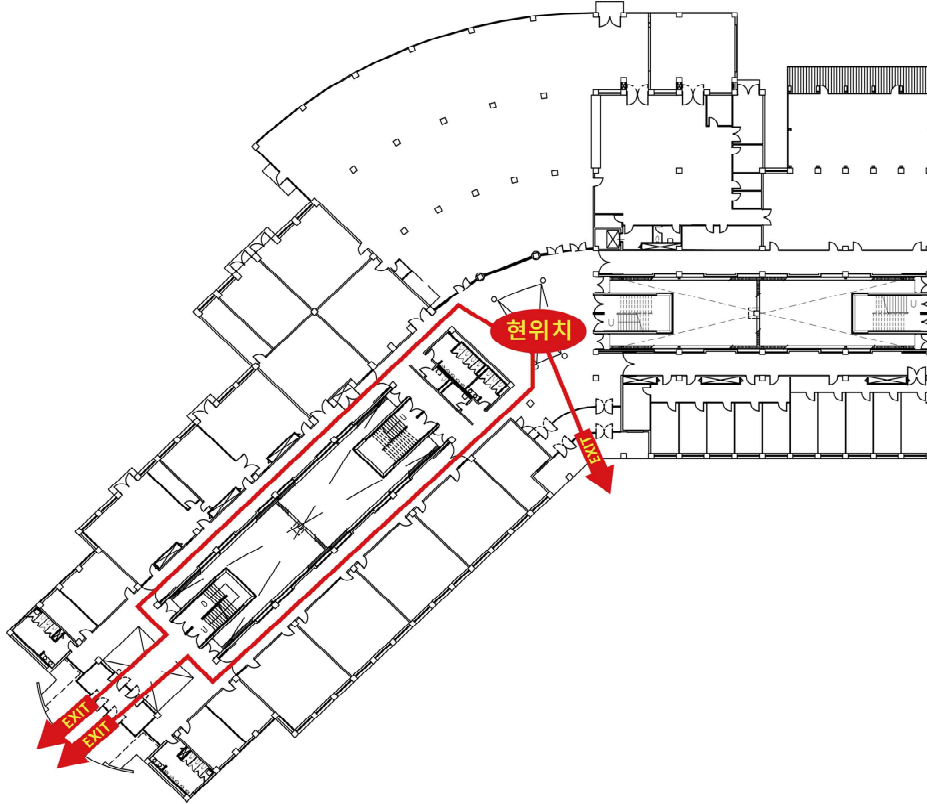
한라관 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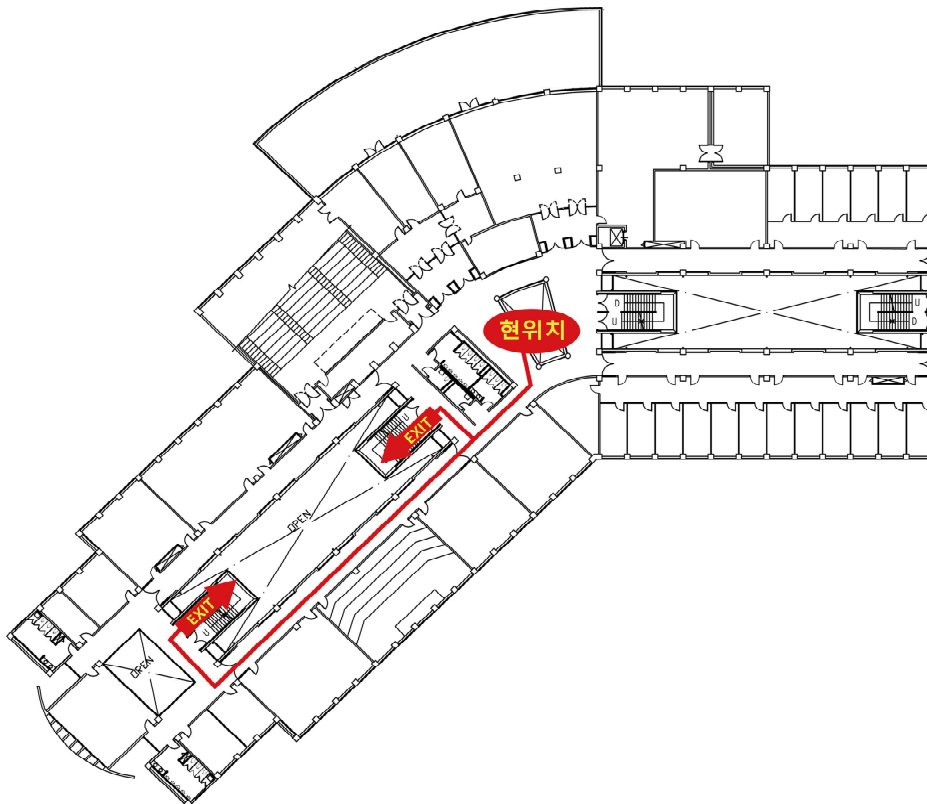
한라관 9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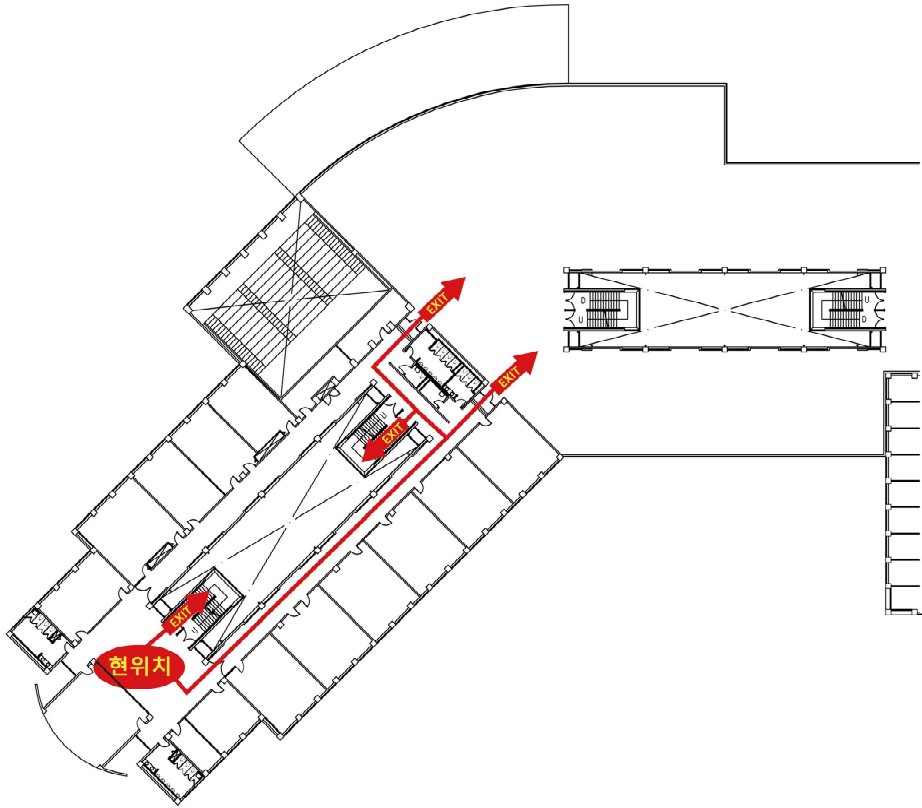
진리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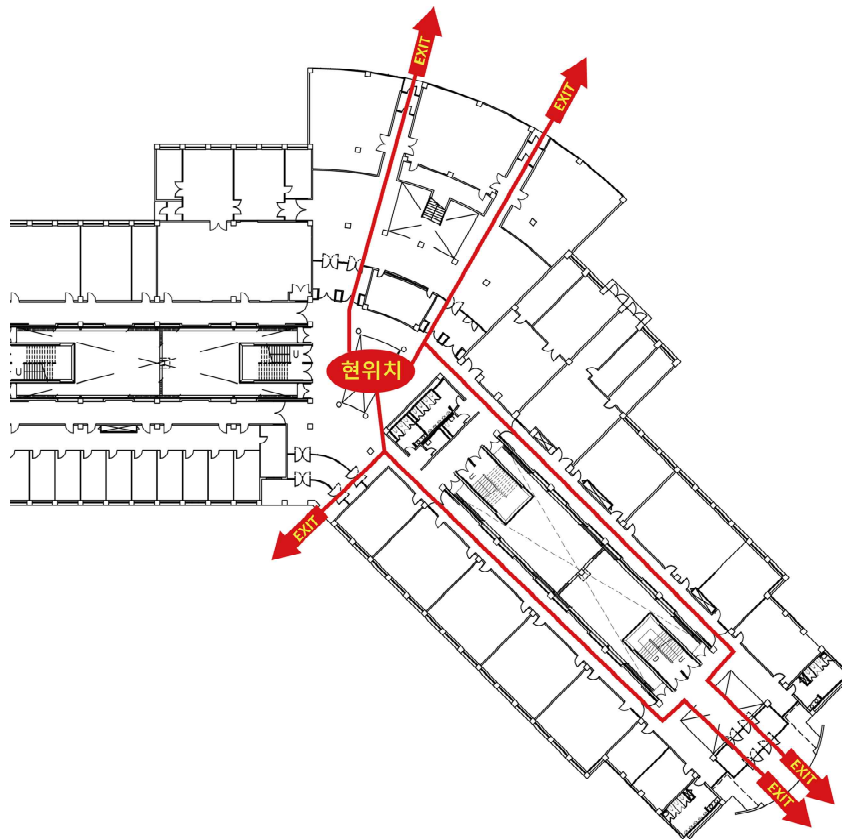
진리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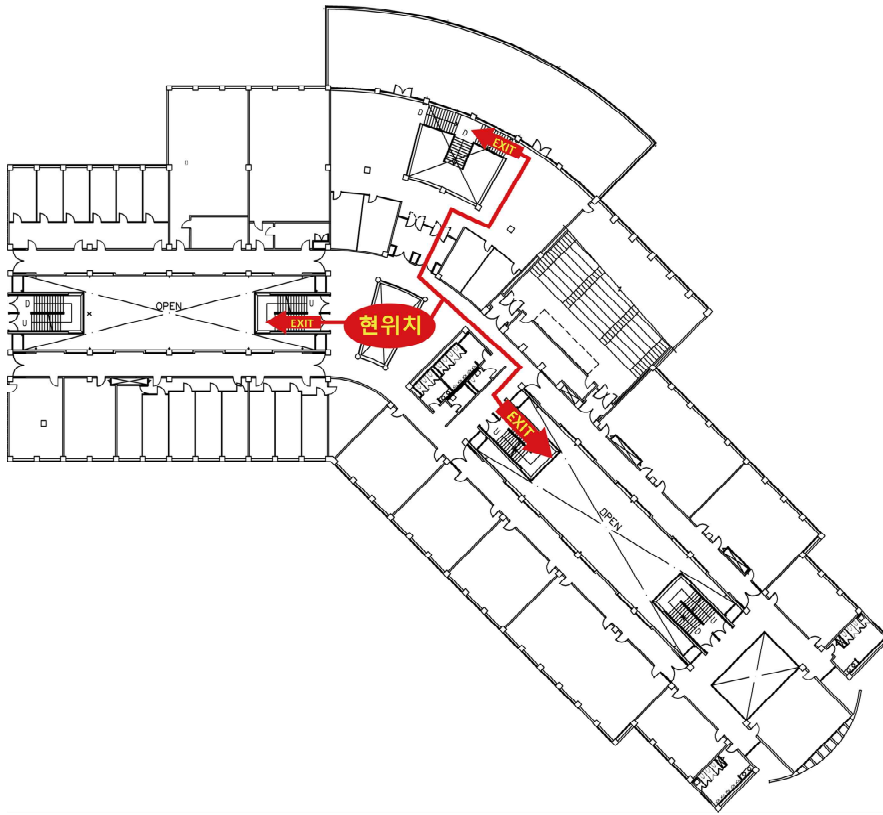
진리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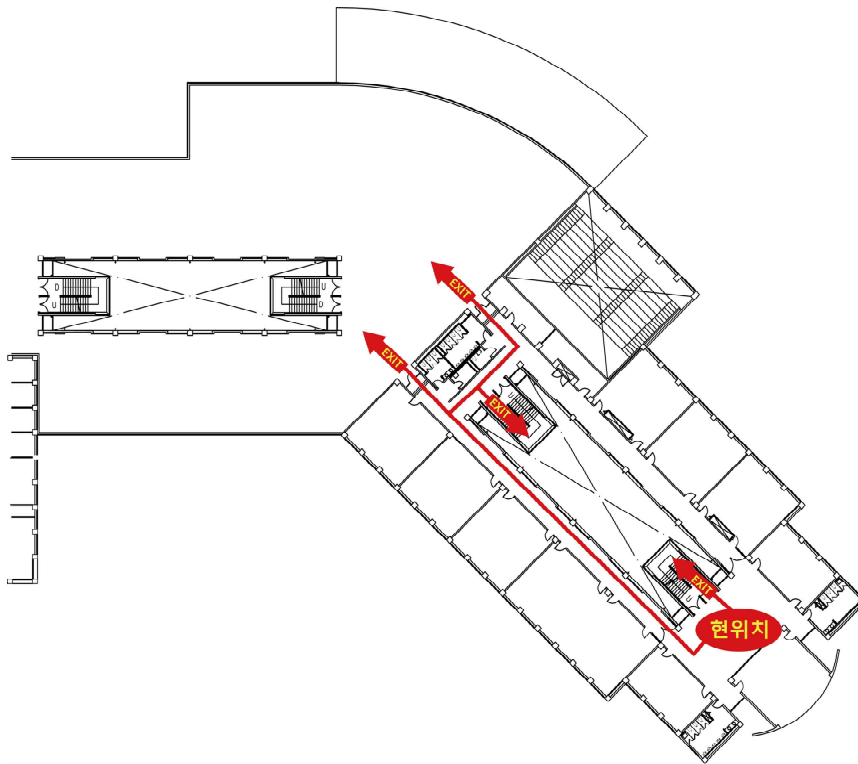
창조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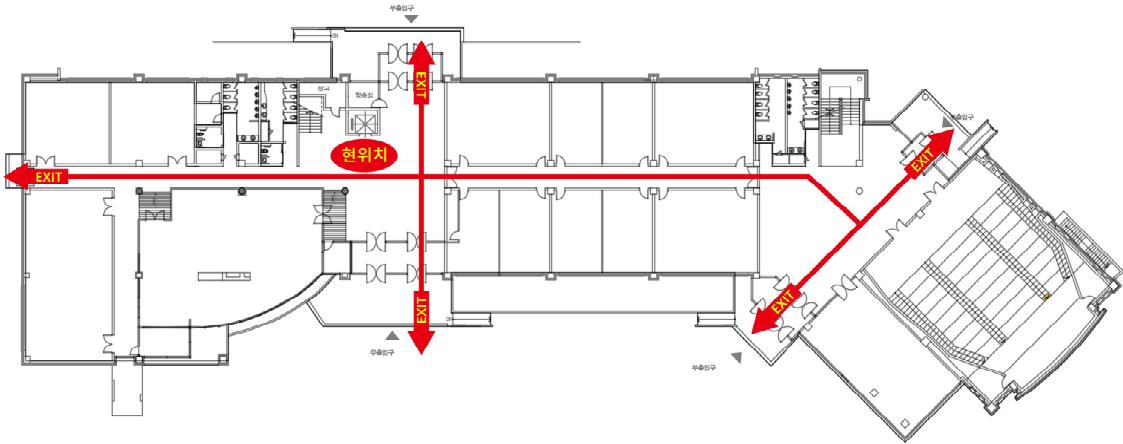
창조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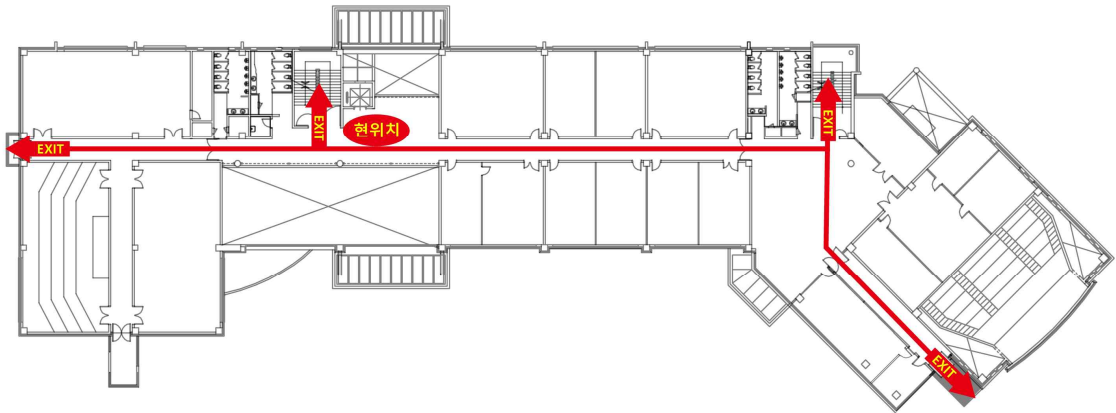
창조관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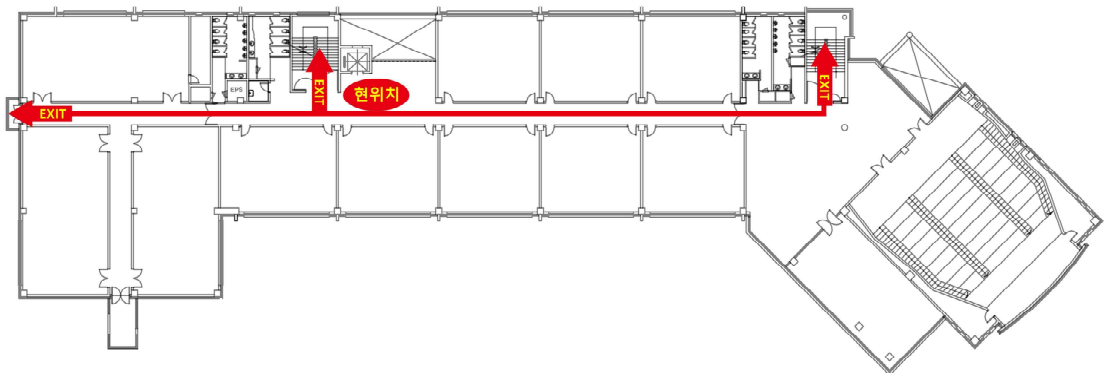
음악관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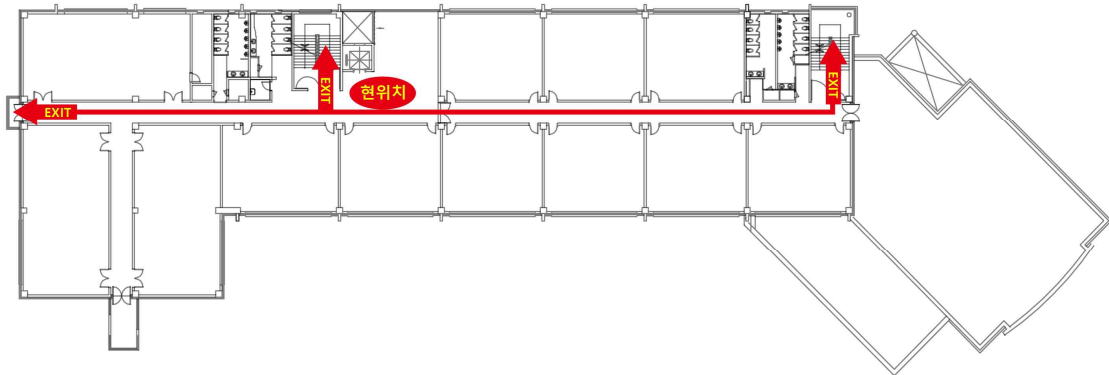
음악관 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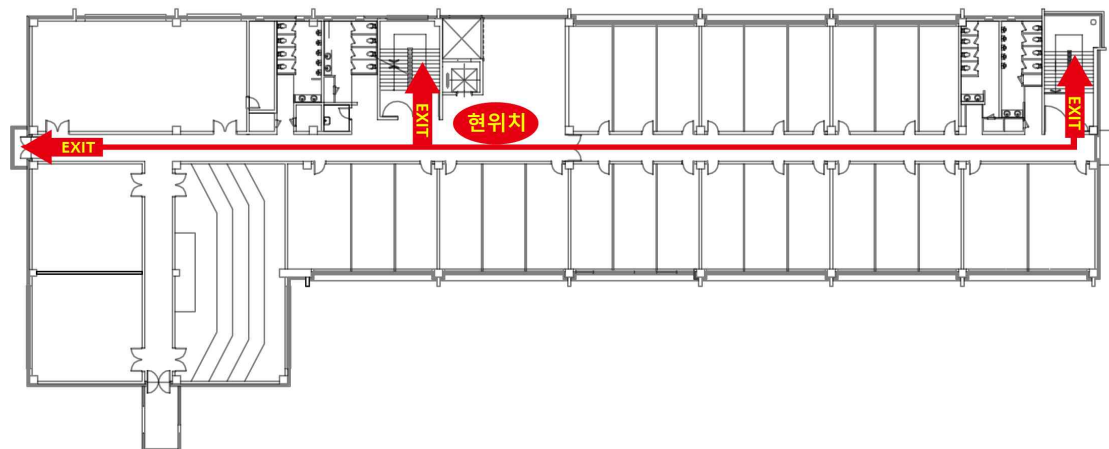
음악관 3층



운곡관 4층



운곡관 5층



2 조직체계 현황

- 대학 총괄 안전관리 조직체계 확립
 - 총괄 안전관리 전담 조직 설치 및 총괄 안전관리책임자(관)와 안전·보건 경영에 관한 안전관리자 지정으로 안전관리 조직체계 마련
- 대학안전 관련 환경 변화 대처 필요
 - 산업안전 체계 구축으로 교육현장의 산업안전보건 역량 강화 필요
- 주요기능
 - 안전정책 기획 및 총괄·조정, 대학 구성원 참여 확대 안전점검 추진
 -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 범죄, 산업안전 등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 소관기관별 직제규정 중심으로 안전 관련 주요 임무·기능 기재
- 담당부서현황 및 비상연락망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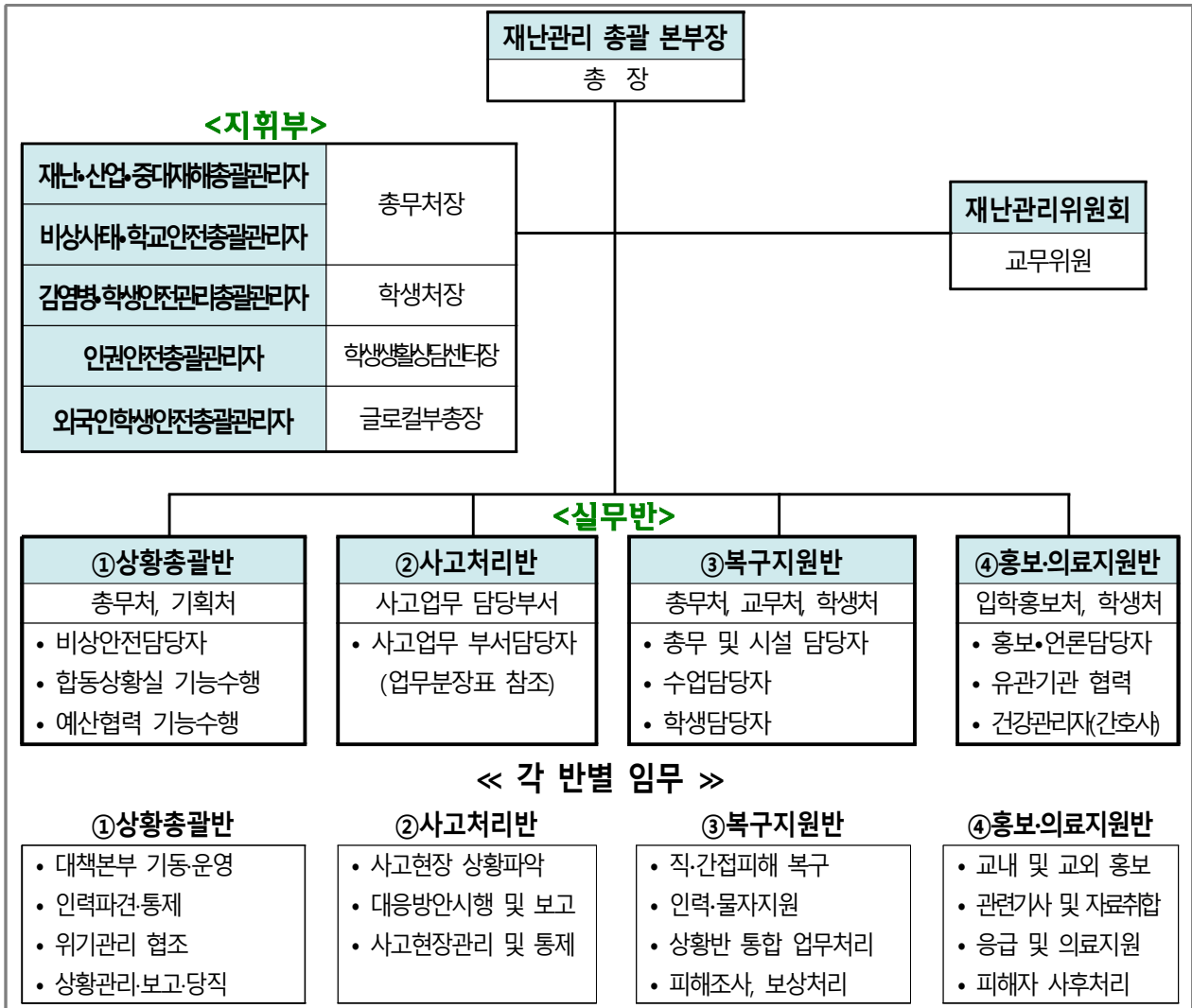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총무처	관계부서
1. 재난	자연재난	총무과	시설안전관리과
	사회재난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과	학부(과)
		현장실습지원센터	관계부서
		총무과	시설안전관리과
		교무과	학부(과)
		글로벌인재처	관계부서
	연구실 사고	시설안전관리과	학부(과)
	교육시설안전	시설안전관리과	관계부서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지원과	관계부서
4. 범죄	성범죄	학생생활상담센터	관계부서
	일반범죄	교원: 교무과 직원: 총무과 학생: 학생지원과	관계부서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설안전관리과	관계부서
	중대재해처벌법		
6. 기타	비상사태	총무과	관계부서

□ 재난관리위원 비상 연락망

부서명	직책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총장실	총장	김응권	033-760-1111	010-
산학부총장실	산학부총장	김순석	033-760-1501	010-
글로벌인재처	글로벌부총장	김종하	033-760-1201	010-
교무처	처장	오진성	033-760-1286	010-
기획처	처장	조용남	033-760-1121	010-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010-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010-
대학(학과/부)	학장	유영관	033-760-1424	010-
학술정보원	원장	윤혜영	033-760-1181	010-
운곡교양교육원	원장	이영애	033-760-1339	010-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사태 악화시 운영)



* 인권센터, 국제교류센터 직제 신설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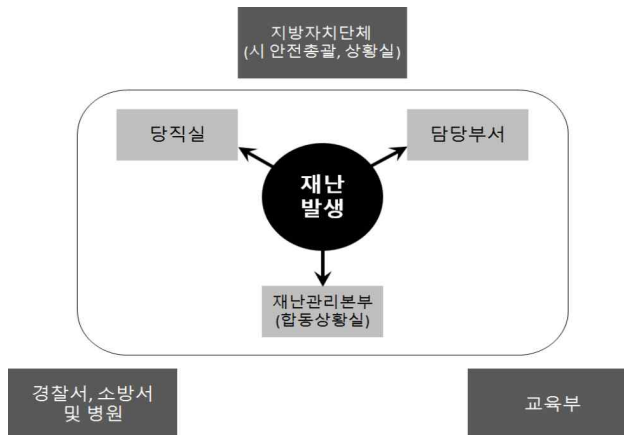
○ 분야별 업무분장 현황

구 분	재난·산업·중대재해 총괄관리자	비상사태·학교안전 총괄관리자	김염병·학생안전관리 총괄관리자	인권안전 총괄관리자	외국인유학생안전 총괄관리자
총괄 관리자	총무처장 (최준규)	총무처장 (최준규)	학생처장 (김미영)	학생생활상담센터장 (조수민)	글로벌부총장 (김중하)
분야별 관리자	관리(책임)자 - 김삼모차장 - 이강국 - 이장현 - 한홍구	관리(책임)자 - 이영우계장 - 고미영과장 - 한상현중대장	관리(책임)자 - 신근화과장 - 유지향간호사 - 김지윤과장 - 정혜령과장 - 이영주과장	관리(책임)자 - 강은영전문상담원 - 김솔안전전문상담원	관리(책임)자 - 김성훈실장
소관 위원회	- 연구실안전관리 위원회 -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 민방위대 - 방위협의회 (전시 방위지원본부)	- 학생생활위원회 - 학생상별위원회 - 학생생활관운영 위원회	- 양성평등상담실 양성평등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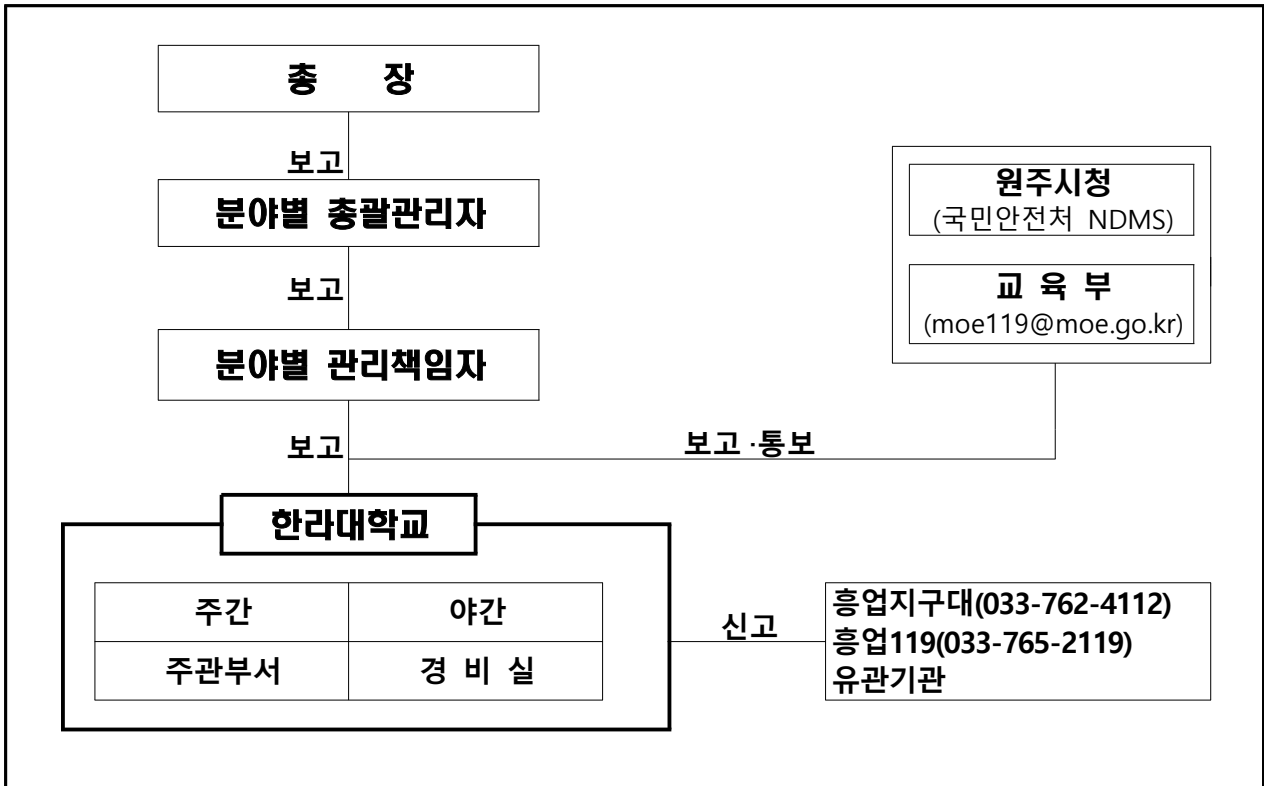
2026 한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대학 안전 계획	- 사회재난 - 안전재난 - 연구실안전관리 - 교육시설안전 - 산업안전보건 - 중대재해 - 식중독사고	- 총무계획수립 및 관리 - 민방위 훈련 - 재난안전훈련 - 학교내 테러방지 - 예비군 훈련 - 전시계획	- 학생행사안전관리 - 감염병예방 - 학교폭력예방 - 학생행사안전 - 현장실습안전	- 성희롱·성폭력 예방	- 외국인 학생 안전관리
소관규정	- 연구실안전관리규정 - 소방계획서 - 시설물관리규정 - 환경안전관리규정	- 국가총무계획200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 방위지원본부운영 내(대내보관) - 국방부 예비군 훈련 지시(36사단) - 작전계획(작계5027)	- 감염병 관리상황의 학사운영 및 지원 에 관한 규정 - 학생 상벌 규정 - 학생 생활 규정 - 동아리 등록 및 운 영 규정 - 학생복사시설관리규정 - 학생회관운영규정 - 보건진료소운영규정 - 학생생활상담센터규정	-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외국인 유학생 지원 규정 - 국제교류 및 교 환학생 규정
관련법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육시설 유지관리 에 관한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 상에 관한 법률」 -「시설물관리법」 -「공공기관의 운영관 리에 관한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피해방지법」 -「전기안전관리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가계설비법」 -「건축물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관리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민방위 기본법」 -「예비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상해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국민건강보험법」 -「도로교통법」

○ 대학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내부 상황 보고 체계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학 교 안 전 총 괄 과	044-203-6892	주간
	044-203-6118	야간(당직실)
교 육 안 전 정 보 국	044-203-6911	실험실
교 육 정 보 화 과	044-203-6504	사이버 안전
대 학 정 책 과	044-203-6927	성폭력
학 생 감 염 병 대 책 반	044-203-7116~9	감염병

II **위험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1.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자연 재난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ywkwak@halla.ac.kr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피해현황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 삼척소방서, 삼척지자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합동조사 결과
 - 2019.10.03. 태풍 '미탁'의 내습에 따른 시속33Km의 강풍과 60~70mm/h 집중호우 등의 기상이변의 주요원인으로 연도별 피해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로, 기상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재해취약시설 사전예방 관리·조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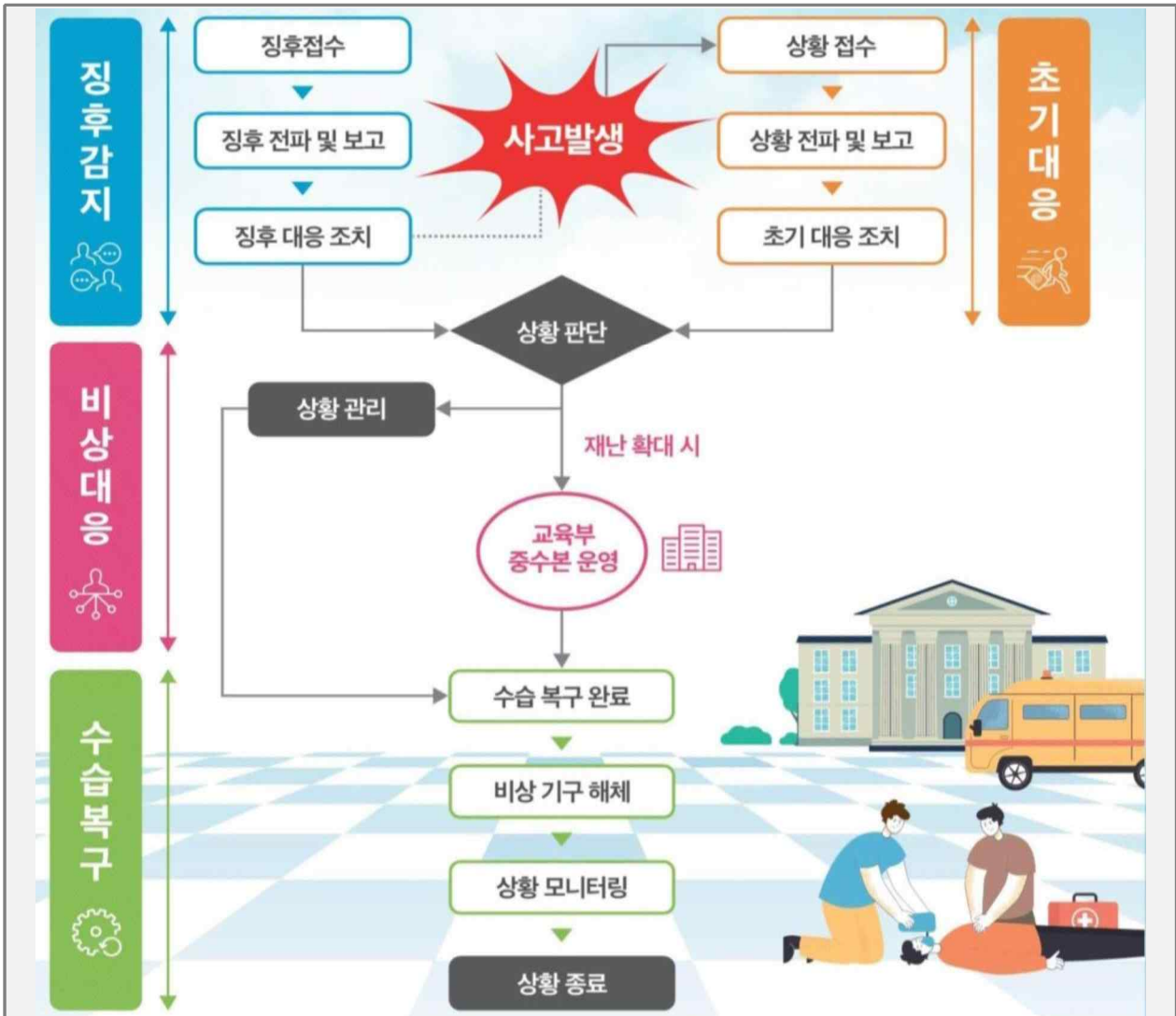
□ 조치사항(원인분석에 따른 조치)

-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합동 재난상황 확인 및 보상청구 후 복구공사 시행
 - 2019.10.03. 태풍 '미탁'의 내습에 따른 지하층 침수로 즉시 배수 작업 시행
 - 2019.10.0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와 합동으로 재난상황 확인 및 보상 청구
 - 2019.12.24. 수해복구공사 완료(실내건축, 전기, 기계설비 공사)
 - 호우 대비용 배수펌프 비치 완료, 태풍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 관리 조치 강화
 - 2021.12.03. 삼척수련원 매각 완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과 취약시설 점검을 통한 재난 사고와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 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공통자료]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대학 캠퍼스 구성원(교직원, 학생 포함) 교육실시(온라인교육)

- (실시) 여름철, 겨울철 각 1회 실시
- (홍보) 학기 초 각 대학(학부, 학과) 학생회를 통한 정기안전교육 홍보 실시
- (평가) 교육 후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지속적 캠페인 실시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 (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관리 책임자 지정 관리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경비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가동 및 대학합동상황실 구성 및 운영
- 필요 시 재난관리본부 내 조직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 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 - 재난상황 보고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 풍수해 재난사태 발생시 단계별 대응

구 분	판단 기준	주요 조치사항
사전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 및 호우 빈발 시기 ●태풍정보 발표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 상황 확인 및 전파 ●안전점검반 편성 ●배수관 청소, 옥상배수관 등 피해발생 예상지역 사전점검 및 위험요소 제거
비상1단계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호우 예비특보가 발효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상예보 모니터링 및 위기상황판단 ●학생안전대책 수립 ●협조체제 가동 ●비상연락망 확인 및 장비·인력 점검
비상2단계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풍·호우 주의보·경보 발표 ●국지적인 피해 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수·붕괴 예상 시설(지역) 출입통제 ●대비계획 점검 ●비상근무 강화
비상3단계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적 태풍·호우 경보 ●전국적 대규모 피해 발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 대응태세 돌입 ●비상근무 강화 ●학교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 지진 재난사태 발생시 단계별 대응

구 분	조치사항
초동상황 대응·지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 발생 정보의 접수 ●직원 상황전파(비상연락망) 및 비상소집
대응조직 구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황판단회의 개최 ●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상황 파악 및 교육부 보고
긴급대응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대책본부 각 반별 가동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학교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점검
사후수습 및 복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시설물 피해현황 파악 ●학교시설 복구계획 수립 ●이재민 수용시 대책수립 ●응급 수업 대책(임시휴업, 인근시설 이용 등) 수립

- 황사, 미세먼지 발생시 단계별 대응

구 분	조 치 사 항
발생 전	기상예보의 청취,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검토
발생 중	실외활동 금지, 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검토
발생 후	학교 실.내외 청소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서) 작성 *피해조사결과 교육부 제출(피해신고)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의료반의 편성·운영
- 보건소, 보건지소 등 비상대기조 편성·운영
- 경상자는 원거리의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는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으로 후송
- 보상의무자의 치료비 부담능력 및 보험조치 가능여부 확인 조치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진단 후 보상 내용 결정(장례비, 유족배상 등)
- 보상금 지급·정산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 등 대피소 순회 진료 등 구호활동 실시
- 피해지역 보건소장이 신속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난 보건 대책 현지 본부를 설치, 체계적인 구호활동 추진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대학 내 발생한 실험·실습실 사고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제거 및 예방활동에 활용
- 중대 안전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

◎ 모니터링 주요 결정사항

- 모니터링 대상 및 측정방법
- 재난(사고)에 대한 모니터링, 피해현황 측정, 원인 분석 및 평가방안 모색
-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기 결정
- 사전 재난(사고)요인을 사고 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 상기 활동에 대한 문서화 작업
-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

◎ 모니터링 주요 착안사항

- 각 대학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고려 및 최근 재난(사고)현황 사전 중점 분석
- 각 대학의 재난(사고)관리 정책의 적절성·시의성 및 준수 여부
- 재난(사고) 발생 후, 재난(사고)안전관리체계의 적절성 여부 등

◎ 모니터링 점검 활동을 통한 개선·보완 필요사항은 모든 재난(사고)발생 매뉴얼에 반영

◎ 재발방지를 위해 부적합사항의 원인 검토·제거, 유사 부적합사항 규명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3)

[공통자료] 재난안전관리 단계 구분

- ❖ **(예방)** 재난·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재난·사고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4장 재난의 예방(제25조의2~제33조의3) 관련
- ❖ **(대비)** 재난·사고 발생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 교육, 훈련함으로써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재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5장 재난의 대비(제34조~제35조) 관련
- ❖ **(대응)** 재난·사고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
 ※ 「재난안전법」 제6장 재난의 대응(제36조~제57조) 관련
- ❖ **(복구)** 재난·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재난·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관리 능력을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화재보험료	13	13	17	43	
계	13	13	17	26	

② 사회재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사회 재난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협조부서

<담당부서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소지 자격증	비고
사회 재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위험물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미세먼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
 - 사업장, 발전소, 자동차 등에 의한 초미세먼지 생성과 대기 정체 및 외기 유입에 따른 고농도 초미세먼지 상황 발생으로 학생건강 위협 및 수업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계	0	0	0	0	0	0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사고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 관련 매뉴얼 : [별첨1] 학교시설 재난 및 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교육부, 2021)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2026 한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관련 매뉴얼 : [별첨2]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교육부, 2021)

[별첨3] 우편물테러 식별 및 대응요령(대테러센터)

- (미세먼지) 공기정화장치, 공조장치 등 미세먼지 저감 장치·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고,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및 위기경보 발령 시 학사운영 대책방안 마련

※ 관련 매뉴얼 : [별첨4]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교육부, 2022.8)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소방시설점검용역비	7	7	1.2	15.2	
계	7	7	1.2	15.2	

2. 안전사고

① 대학 안전사고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학생 안전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과	과장	신근화	033-760-1921, khshin@halla.ac.kr	
현장실습안전	취창업진로지원센터	부장	최상규	033-760-1153, sgchoi@halla.ac.kr	
교통 안전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kanggool.lee@halla.ac.kr	
외 국 인 유 학 생 안 전	글로벌인재처	센터장	김종하	033-760-1922, h_jkmin@halla.ac.kr	
	글로벌인재처	부실장	설혜숙	033-760-1124, hsseol@halla.ac.kr	
수업 안전	교무처	처장	오진성	033-760-1131, jinsungoh@halla.ac.kr	
	교무처	대리	조선영	033-760-1133, sunyoung.cho@halla.ac.kr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 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교육시설 안전사고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사고 공통] 안전사고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교내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개선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 공사장 주변에는 통행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방안 마련
- 교내 차도는 보행자가 이용하는 건물의 출입지점과 충분히 떨어져 있도록 설치·개선
- 교내도로는 양호한 배수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의 바닥이 평평하고, 파손에 의한 틈새나 구멍이 없고, 흙이나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럽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보행자들의 발이 미끄러지거나, 걸리거나, 부딪치거나, 헛딛어 넘어질 수 있는 장애물이 없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간의 시야 방해물이 설치·적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한 속도 규정을 마련하고, 과속방지시설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경사도로에는 미끄럼방지, 과속방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 교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행사시설 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및 안전요원 배치
-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행사계획 수립 시 「행사 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사 시작 일 2주 전까지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대규모행사의 경우 행사기획팀, 장소와 배치 설계, 의료진, 비상계획과 경비, 커뮤니케이션, 교통, 계약자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행사 안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사 승인요청서」와 함께 행사 승인부서(학생처)에 제출
- 행사장소 및 사람에게 차량 돌진을 방지할 수 있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경비인력 배치 등 예방대책 마련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행사승인 부서는 대규모행사를 준비하는 대학의 기관·조직·단체에 대해서 이들의 안전한 행사 기획과 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장비 등을 제공
- 행사와 관련한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계약업체나 서비스업체는 상해보험 가입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행사 시 전기안전, 식품안전, 행사에 사용되는 놀이기구 등의 안전지침 마련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규정 준수 여부 확인·점검

○ **학생 집단활동 안전**(2023년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준수)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집단연수 운영 시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최소한의 안전관련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대학본부는 학기초 학생회 간부 등을 대상으로 집단연수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교육
- 대학생 집단행사 시 인파밀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철저

- 학생집단연수를 주관하는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기획자, 인솔자, 참가자의 역할과 책임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요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해외 학생 집단연수를 기획하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잠재적 안전 위험요인의 탐색·평가·관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집단연수 4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

* (포함사항) 방문지역, 수행 활동, 인솔자와 참가자 등

○ **현장실습 안전**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재해예방 관리

-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성희롱 교육 등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 요청(실습기관)

❖ **(상해보험)** 대학은 현장실습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의무적으로 가입

* 상해+후유장애+통원의료비+처방조제비+배상책임+장례비+상조지원 등 보상

❖ **(산재보험)**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에 한해 근로자로 의제하여 보험 의무 가입*

*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노동부고시) 개정('18.9.11)

< 참여학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고용부고시) >

구분	고등학교	대학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계고 한정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현장실습 한정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및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상 실습학기제 등 포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등
대상	▶ 약 6만명	▶ 약 15만명

- 실습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휴게시간, 휴일 보장에 관한 사항 협의
-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참관 하 실시

-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근로문제 예방 및 권익보호 강화

-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근로문제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확인

※ 실무직무 범위 내 노동관계법령 준수, 운영계획서 제출 시 실습기관과 협의·체결

- 학생의 현장실습 상황 모니터링 및 확인·관리

⇨ 학생이 부적정한 실습사항*을 알려온 경우 실습기관에 시정요청, 중단 및 복교조치

* 실습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업무부여·지시·강요, 실습시간 기준 위반, 실습지원비 미지급 혹은 기준이하 지급, 산업 안전·재해·보건·위생·성희롱 등의 문제, 현장실습 운영조건 변경·조정 발생 등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강의실, 강당/체육관, 도서관(실), 미술/음악/무용실, 주방/식당, 사무실/작업·실습실/회의실, 공용공간(현관/복도/계단/화장실), 체육시설, 옥외 공간(조경/수경시설), 옥외 조형물 등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칙 수시 교육
- 외국인유학생의 집단연수 참여시 안전관리자 동석으로 안전관리 확보
- 외국인유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자의 참여로 안전한 행사 진행
- 외국인유학생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행사 개최 시 학생처와 안전관리 협업
- 외국인유학생들의 기숙사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일과 후 안전관리 대응
- 외국인유학생들의 주말 및 휴일 교내 체류 관련 안전관리 비상연락망 운영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 · 복구 단계 추진계획**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별첨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4)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교내활동)** 학교안전사고 유사사례, 통계 등의 검토·분석을 통한 사고유발 요인 사전 예방·대응관리와 안전사고 유형별 신속한 보고체계 및 적절한 보상·회복 지원 기반 조성
 - ※ 관련 매뉴얼 : 대학안전사고 관리지침(교육부, 2022 예정)
 - [별첨5] 다중이용시설 테러예방활동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차량테러)** 차량테러의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차량테러 대책(안)을 강구 하고 공연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대학축제 등 대규모 행사시 차량테러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위기관리 능력 제고
 - ※ 관련 매뉴얼 : [별첨6] 차량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대테러센터)
- **(교외활동)** 대학본부, 단과대학 등이 주관하여 교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 시 교통·숙박시설 이행, 행사관련 각종 보험가입 등 학생안전에 필요한 각종 사항 점검·교육
 - ※ 관련 매뉴얼 : [별첨7]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교육부, 2020)
 - [별첨8] 대학생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매뉴얼(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시설안전	1,815	2,109	3,342	7,266	
현장실습안전	0	0	0	0	
행사안전	0	0	0	0	
수업안전	0	0	0	0	
계	1,815	2,109	3,342	7,266	

2] 교육시설 안전사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교육시설 안 전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 관 부 서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담당부서 자격증 소지 현황>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소지 자격증	비고
교육시설 안 전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위험물기능사, 열관리기능사	
	시설안전 관리과	대리	이강국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한홍구	전기기사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교육시설 안전사고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 관련 매뉴얼 : [별첨9] 교육시설안전 인증 자체평가서 작성요령(교육부, 2021)
교육시설 안전점검 매뉴얼, 안전·유지관리 매뉴얼(교육부, 2022 예정)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 관련 매뉴얼 : [별첨10]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교육부, 2021)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건축물안전진단용역비	3.5	17	3	23.5	
계	3.5	17	3	23.5	

3 연구실사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연구실 안 전	단과대학	위원장	이항수	033-760-1218, hslee@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 관리과	전임	이강국	033-760-1172, youngseok.eom@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겸임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담당부서 자격증 소지 현황>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소지 자격증	비고
연구실 안 전	시설안전 관리과	전임	이강국	건설안전기사	
	시설안전 관리과	겸임	한홍구	전기기사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1	0.2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1	0.20
	계	0	0	0	0	2	0.10

□ 원인분석

○ 사고현황

가. 사고일시 : 2025. 9. 8.(월) 오전 10:52

나. 사고장소 : 한라대학교 진리관 2층 S218

다. 사고내용 : 건축학과 학부생이 건축기초설계 실습 수업 중 실습에 필요한 재료를 커트칼로 절단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가락(다섯번째)을 베이며 출혈이 발생.

라. 보고지연사유 : 9월 8일 건축학과에서 사고 소식을 접한 뒤 대학안전사고보상 공제 사고 통지 메뉴얼을 확인하여, 사고 학생의 진료 절차가 완료된 후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를 통해 공제급여를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실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제급여 청구처가 다른 부서임을 확인하여 해당 부서에 재통보하는 과정에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총무처 시설안전관리과 이강국 대리)에게 사고 상황 통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됨.

마. 사고처리 대책

- 1) 향후 사고 발생 시에는 연구실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고, 관련 부서와의 협조 절차를 사전에 재정비하여 동일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업무를 강화
- 2) 실습도구 사용 전 안전수칙 교육, 보호장비 사용 독려, 실습 공간 정리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학분야 사고

➔ 화학물질 누출·접촉

* 사고상황: 황산이 들어 있는 시약병을 옮기는 과정에서 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황산액이 바닥에 누출되어 있는 상태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약품 누출 발생사고 상황 신고(위치, 약품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금속성물질이나 인등 물과 반응하는 물질이 묻었을 경우 물로 세척 금지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정화 및 폐기작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 (흡착제, 흡착포, 흡착웬스, 중화제 등 사용)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 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 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화학물질 화재·폭발

* 실험 중 톨루엔(유기화합물 등)이 들어 있는 용기 내 압력 증가로 용기가 파열 되면서 톨루엔(유기화합물 등)이 비산 되어 화재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SDS/GHS 비치 및 교육 - 화학물질 성상별 분류 보관 - 폭발 대비 대피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량의 인화물질을 보관하기 위한 별도보관 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초기진화 실시 - 2차 재해에 대비하여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물 분무 - 금속성 물질이 있는 경우 물과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화재 진압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을 통한 사고전파로 신속한 대피 유도 - 호흡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실시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필요 시 전기 및 가스설비 공급 차단 - 사고물질의 누설, 유출방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가스 또는 연소생성물의 호흡방지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 유해물질에 노출된 부상자의 노출된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초기 진화가 힘든 경우 지정대피소로 신속히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관한 경우 주변의 연소방지를 중점적으로 실시 - 유해화학물질의 확산, 비산 및 용기의 파손, 전도방지 등 조치 강구 - 소화를 하는 경우 중화, 희석 등 재해조치를 병행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인근병원으로 후송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대피소로 집결한 인원확인 (건물별 또는 연구실별) - 전기 및 가스 설비 점검 후 공급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사고상황: 폐액용기를 들고 운반 하는 중 폐액 용기 파열로 운반자가 화상을 입는 사고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폐액용기에 연구실명, 폐액 종류, 주의사항 등 라벨 부착 - 폐액 종류별 각각 분리 보관 - 폐액용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진 곳에 보관 - 폐액용기 운반 시 보호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액용기 운반용 기구 비치 - 폐액용기의 운반담당자 지정 및 운반 절차 등 수립·시행 - 폐액용기 임시 저장소 마련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사고 전파 - 안전담당부서(필요 시 소방서, 병원)에 사고 상황 신고(위치, 폐액 종류 및 양, 부상자 유무 등) - 부상자의 폐액 접촉 부위를 깨끗한 물로 20분 이상 씻어줌 -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면, 안전담당부서와 함께 정화작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출물질에 대한 MSDS/GHS 및 대응 장비 확보 - 사고현장에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사고처리 (흡착제, 흡착포, 흡착웬스, 중화제 등 사용) - 부상자 발생 시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전기분야 사고

➔ 감전

* 누전차단기의 작동 불량인 상태에서 절연불량의 전기기기(또는 전선피복의 노출부) 접촉으로 감전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압 및 감전 안전보건표지 부착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 취급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개인보호구 보유 및 실험형태에 따라 반드시 착용 - 전기관련 실험 시에 안전거리 확보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위치 파악 -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누전차단기 등 보호장치에 대한 작동 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장갑 착용 후 해당 전기기기 전원 신속히 차단 - 구호자의 2차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 절연봉(마른 나무막대,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하여 부상자를 구호하고 부상자와 신체접촉이 되지 않도록 주의 - 부상자의 상태(의식, 호흡, 맥박, 출혈 등)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 필요 시 병원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체외제세동기(AED) 실시 - 부상자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전기화재

* 사고상황: 많은 플러그가 꽂혀 있어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멀티 콘센트의 과열(또는 단락, 스파크, 접촉불량, 누전 등)로 화재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을 초과하는 문어발식 멀티콘센트 사용 금지 - 전기기기의 수리는 전문가에게 의뢰 - 비규격 및 안전인증 미 취득 전기제품 사용 금지 - 전열기 근처에 가연물 방치 금지 - 전기기기 사용 시에는 필히 접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속제 외함 전기기기 접지실시 - 결함이 있는 전기설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 - 연구실 내 추가 설치되는 전기기기의 정격용량 확인 등 정격 용량 증감 요소 확인 및 조치 - 보호 장치 등 안전설비에 대한 작동상태 주기적 점검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발생 전기기기의 전원을 신속히 차단 - 연기에 의한 피해자나 화재에 의한 화상자 발생 시 응급처치 - 화재 발생 시 해당기기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 있으므로 물 분사 금지 - 소화기는 가능하면 C급 소화기 사용하여 초기 진화 - 필요 시 유관기관(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현장 주변 접근금지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제 구역 설정 - 사고 발생 지점 전기배선 상위단위분전반 전원 차단 - 연기 질식 환자에 대비한 신선한 공기 확보 및 안전한 장소로 유도 및 안정 - 전원 재투입 전에 접지 확보 및 각 기기별 절연진단을 실시하여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 화상 및 질식 전문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 조치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기계분야 사고

➔ 끼임 및 절단

* 사고상황: 기기를 이용한 실험 중 기계에 끼임, 물림, 접촉 등에 의해 신체 절단, 골절, 타박상, 찰과상 등의 사고 발생 상황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안전장치 설치(방호덮개, 비상정지 장치 등) - 기계별 방호조치 수립 - 기계사용 시 적정 개인보호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하고 있는 주요 위험 기계 목록 작성 유지 및 점검 - 방호장치 작동 여부 확인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사고 발견 즉시 사고기계의 작동 중지(전원차단)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손가락이나 발가락 등이 잘렸을 때 출혈이 심하므로 상처에 깨끗한 천이나 거즈를 두툼하게 대고 단단히 매어서 지혈 조치 - 절단된 손가락이나 발가락은 깨끗이 씻은 후 비닐에 싼 채로 얼음을 채운 비닐봉지에 적지 않도록 넣어 빨리 접합전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 의식이 있는 부상자는 담요, 외투 등을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 - 의식이 없는 부상자는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유무를 체크하여 심폐소생술(CPR) 혹은 자동심장제세동기(AED) 실시 및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기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기타 사고

➔ 화상

* 사고상황: Oil Bath를 이용하여 고온, 고압반응 실험을 하던 중 Oil Bath 내부의 반응 튜브가 터지면서 고온의 기름(200°C)이 안면부 및 손등에 튀는 화상 사고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내 고온, 저온 발생장치에 대한 작동 기능 확인 - 화상치료 전문병원 연락처 등 확보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화학물질이 액체가 아닌 고형물질인 경우 물로 씻기 전에 털어 냄 - 가벼운 화상의 경우 화상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물에 적신 차가운 천을 대어 통증 감소 - 심한 화상인 경우 깨끗한 물에 적신 행건으로 상처 부위를 덮어 냉각하고 감염 방지 등 응급조치 후 병원 이송 조치 - 화상부위나 물집은 건드리지 말고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를 거즈로 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차단 여부 추가 확인 -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 전원 재투입 전에 기계별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상처 및 출혈

* 사고상황: 1. 비이커 운반 중 비이커가 깨짐으로 인한 베임

2. 이동 중 설치된 실험기기와의 충돌에 의한 출혈

3. 낙하하는 실험장비에 의해 멍든 상처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착용 후 실험 - 안전보건표지 부착 및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주변 전문병원 연락처 등 비상연락망 확보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베임 경우 상처 소독보다 지혈에 신경 쓰고 작은 상처는 1회용 밴드로 감아주고 큰 상처의 경우 붕대를 감은 후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 - 피부가 까진 경우 소독하기 전에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고 소독액 사용 - 멍이 든 부위를 얼음주머니나 찬물로 찜질을 하고 시간이 지나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면 골절이나 염좌가 의심되므로 골병원 진료 실시 - 지혈 등 응급조치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유해광선 접촉

* 사고상황: 레이저 또는 용접 중 유해광선에 의한 시력 장애 발생

구 분	연구실 책임자, 연구종사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사고 예방·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원의 격리, 차폐 - 차광장치 설치 - 차광보호구 구입 및 비치 - 실험 중 차광보호구 착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광, 차폐장치 이상 여부 점검 - 차광보호구 이상여부 수시 점검
사고 대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실험장치 작동 중지 - 사고 상황 파악 및 부상자를 안전이 확보된 장소로 옮기고 적절한 응급조치 시행 - 기관 내 보건소 또는 병원에 이송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접수 및 사고 장비(레이저, 용접기 등)의 위험성 확인 - 사고현장 출동 및 안전보호구 착용(보안경, 안전장갑 등) -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 차단 여부 추가 확인 - 전원 재투입 전에 해당 실험장치의 안전상태 확보 및 사고 원인 제거 재차 확인
사고 복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은 보존하되,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범위 내에서 사고현장 주변 정리 정돈 - 부상자 가족에게 사고 내용 전달 및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장비에 대한 결함 여부 조사 및 안전조치 - 사고원인 조사 - 사고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시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1] 연구실 사고 비상대응매뉴얼(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비	23	20	37	80	
계	23	20	37	80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의2, 제29조, 제29조의3, 제23조의3, 제34조, 제35조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감염병 안전관리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498, mykim@halla.ac.kr	감염병총괄	주관 부서
	학생지원과	과장	신근화	033-760-1921, khshin@halla.ac.kr	감시총괄	
	학생지원과	직원	유지향	033-760-1346, health.care@halla.ac.kr	실무총괄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방역(소독)	협조 부서
	총무과	차장	길은아	033-760-1163, ywkwak@halla.ac.kr	방역(구매)	
	교무과	대리	조선영	033-760-1133, sunyoung.cho@halla.ac.kr	수업관리	
	총학생회	회장		033-760-1385	학생소통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점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 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간·계층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감염자 수	46 34(내국인) / 12(외국인)	858 837(내국인)) / 21(외국인)	7 7(내국인) /0(외국인)	0 0(내국인) /0(외국인)	0 0(내국인) /0(외국인)	182.2
인명피해 (사망)	0	0	0	0	0	0

□ 원인분석

- 질병관리청, 원주보건소, 원주지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증대추세이며,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교육·관리강화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감염병 확산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감염병을 예방 위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코로나19 최신 정보 및 국가·지역 발생 정보 등을 확인하여 학생·교직원 등에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및 등교하지 않도록 학생 및 교직원에게 사전에 적극 안내 및 관리 철저
 -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이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홍보 실시

- 감염병 예방수칙 포스터,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을 대학 내 게시판 등 주요장소에 부착
-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교육·안내

< 작성예 : [안내사항] 누구나 해야 할 일,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 누구나 해야 할 일

-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 ① 운동이나 쉬는 시간 후, ② 식사하기 전, ③ 등교 하자마자,

- ④ 화장실 이용 후, ⑤ 집에 도착하자마자, ⑥ 마스크 착용 전·후

▣ 만일 기침이나 재채기를 한다면

- ① 휴지나 옷소매로 가리고, ② 사용한 휴지는 바로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후, ③ 반드시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 누구도 하지 말아야 할 일

- 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때 등교하는 것 ②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는 것 ③ 컵, 물병, 접시, 필기도구, 수건 등 공유하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 것

- 노래방, PC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이용) 및 소모임 금지 또는 자제 등에 대한 학생 교육 및 생활지도 철저
- 학생, 교직원 등이 등교(출근) 전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대학(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에 미리 알리도록 안내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대학 구성원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담은 대응계획(학생 심리지원 포함)을 수립·시행하여 학교 내 직원관리, 환경관리, 상황발생 즉시 대응 등 업무 수행

* 학교의 코로나19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업무를 세분화하고 역할을 정확히 숙지

- 대응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총괄담당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구성하여 감염예방 활동 수행 및 일상회복 방안 마련

※ 임신부,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천식, 만성폐질환자) 등은 담당자에서 제외

※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던 코로나19 비상관리조직을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하여 운영

<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구성 및 주요기능 >

- ▶ (구성) 학내 코로나19 대응 총괄, 실무담당자, 학생 등
- ▶ (기능)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 및 방역관리 상황에 대한 대학 방역관리, '22년 1학기 학사 운영 및 방역 관리 방안 등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학사 운영의 경우, 원격수업관리위원회와 협조)
 - 변경된 방역 수칙과 기초 방역수칙을 학내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하여 생활 속 방역 관리 철저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필수 적용 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외의 학내 시설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할 경우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 비상관리조직, 대학본부, 단과대학, 대학원, 대학보건실 등이 코로나19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 담당자는 대학 내 유증상자 발생 상황을 관리하고, 교육부·유관기관(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연락처를 파악하여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 즉시 대응

○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수검하며, 특히, 가정에서 임상증상 발견시 출근 및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수검
- ※ 검사결과 음성이라도 증상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 참고 : 선별진료소 이동 방법 〉

- 가정에서 발견 : 가급적 자가 차량 이용
- 학교에서 발견 : 보호자 인계 또는 119신고하여 구급대의 지원을 받아 이동
- ※ 선별진료소 방문 전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보건소에 문의

- 학생 및 교직원이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자택에서 7일간(검체 채취일로부터) 자가격리 준수
- * 확진환자의 접촉자 또는 해외입국자 등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자가격리 중인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자가진단 키트) 결과 '음성'일 경우
- ※ 해외입국자이지만 보건당국의 '격리면제 대상자' 동거인은 등교중지 대상 아님
-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 격리 시, 등교(출근) 가능
-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등교(출근) 중지 학생 및 교직원의 출결 및 근태 관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 (예시) 학생 : 출석 인정 / 교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 관련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여행관련 증빙,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또는 보호자 확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출결 및 근태관리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 검사 권고

-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이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 지역사회 유행 양상을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 소속학과, 부서 담당자, 지도교수, 복무담당자 등 학교의 여건에 따라 전담관리 인을 지정하여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를 매일 확인

<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행동수칙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말고 집에서 쉬니다.
 2. 의료기관 진료가 있으면 사전에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지 관찰하여 주십시오.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 시에는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 주십시오.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으세요.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를 하세요.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세요.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세요.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 확진확자 발생 시 대응·조치

< 확진환자 발생시 보건당국 조치사항 >

- ①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이동동선 및 접촉자 확인 등 위한 역학조사 실시
- ② 확진환자 이용시설 방역조치(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소독 등) 명령 등 실시

-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확진환자가 발생한 시설을 일시적으로 이용제한 조치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자로 분류된 학생 및 교직원원은 등교 또는 출근 중지

* 보건당국에서 확진환자와의 최종 접촉일로부터 7일간 격리조치 시행

- 전담관리인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상태 관리
-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소 또는 보건소 역학조사팀과 협의하여 시설 이용제한의 구체적 범위, 폐쇄 기간, 소독 방법등 결정·시행

- 시설 이용제한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감염병 예방 계기교육 실시

-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등 조치한 경우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 집에 머물며 외출 자제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의심증상 확인 시 선별진료 방문진료·검사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 관련 매뉴얼 : [별첨12]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사항

- 증상발생 2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출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9-5-1판(21.4.12.)

학교 내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이용 제한 조치

-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기간은 소독 및 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으로 정하여 시설이용 중단을 최소화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

발생규모	이동 경로	⇒	시설 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강의실 또는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강의실, 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이동 경로 불명확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및 현장 방역 여건에 따라 결정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5	합계	
학교	방역 및 물품	1	1	1.6	3.6	
생활관	방역 및 물품	3	3	1.6	7.6	
계		4	4	3.2	11.2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 Business Continuity Plan) 수립

- 중대본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기능연속성 계획을 수립하여 교내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단계적 조치 (붙임 4)

4. 범죄

① 일반범죄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일반 범죄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과	과장	신근화	033-760-1921, khshin@halla.ac.kr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 (집단)폭행, 협박, 강요, 체포, 감금, 상해, 공갈 등
 - 학교 구성원간의 폭행,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폭력행위와 부적정한 대처로 범죄 피해자 발생 및 잠재적 범죄자 양산 초래
- **(주거 침입)** 사람이 거주·관리하는 건조물·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 적법하게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이사에 반해 타인의 주거·관리하는 시설 침입·점거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0	0	0	0	0	0
피해자 수	0	0	0	0	0	0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건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활동의 활성화 등 CEPTED 기법 적용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관련 매뉴얼 : [별첨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신변위험에 대한 행동요령 마련 및 홍보
- 음주, 흡연, 마약류 사용 등에 관한 규제와 교육 프로그램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안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법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별첨12] 제4차('22~'2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법무부, 2021)

비전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		
목표	<p style="text-align: center;">“원상회복”</p>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실질적 참여”</p>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p style="text-align: center;">“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p>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추진 정책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p style="text-align: center;">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p style="text-align: center;">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p style="text-align: center;">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일반범죄	0	0	0	0	

2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성범죄	학생생활상담센터 · 양성평등상담실	센터장	조수민	033-760-1834, soomin.cho@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생활상담센터 · 양성평등상담실	전문상담원	강은영	033-760-1196, ey.kang@halla.ac.kr	
	인권센터	센터장	이항수	033-760-1900, hslee@halla.ac.kr	
	인권센터	과장	길은아	033-760-1168, eakil@halla.ac.kr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강간, 강제추행,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 범죄 행위로 성적 약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 수	성희롱	-	-	-	2	-	0.40
	성폭력	-	-	-	1	1	0.40
	계	-	-	-	3	1	0.80
피해자 수	성희롱	-	-	-	1	-	1
	성폭력	-	-	-	1	1	2
	계	-	-	-	2	1	3

□ 원인분석

○ 양성평등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 성폭력의 발생 장소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주로 일어났으며, 이에 신입생 O.T를 활용하여 올바른 성 인식과 대처방법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필요함
- 성희롱의 발생 유형은 학생-교수, 직원-교수 간 발생 되었으며 오픈 채팅방 내 사진 전송, 부적절한 관계 요구 등으로 나타남. 이에 직급별, 대상별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함
-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령에 근거하여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 조치사항(원인분석에 따른 조치)

- 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업무 수행
- 폭력 피해 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 대상별, 직급별 맞춤형 폭력예방(법정)교육 운영
-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인권센터 홍보 활동 상시 운영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 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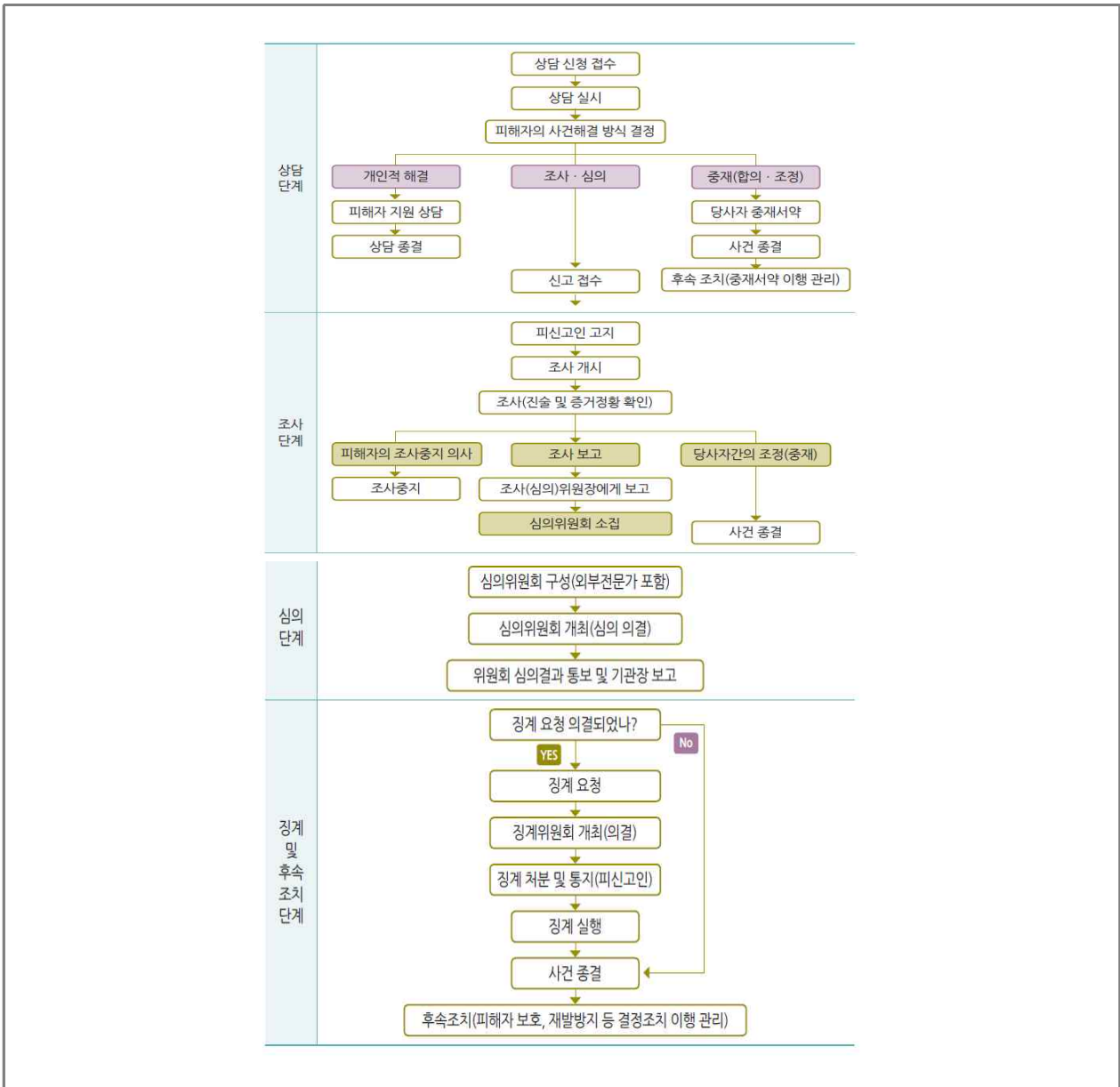
※ 관련 매뉴얼 : [별첨14]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여성가족부, 2022)

[별첨15]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교육부, 2020)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 구분

- ❖ **(상담)** 사건해결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신체·심리·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는 과정이며, 실무역량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단계
- ❖ **(조사)** 관련근거, 조사개시, 서류제한 기한, 조사대상 및 출석통지, 사건처리절차, 당사자의 권리 등에 대해 담당기구에 사건 신고를 접수·고지 및 조사하는 단계
- ❖ **(심의)** 사실관계, 행위의 심각성, 피해범위 및 영향 등에 대한 판단 및 의사결정을 위해 신고인,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징계·조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처분 및 미비사항·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개선추진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1.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서식)

<○○○○○○(기관명), '21.○.○.(작성일)>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 사건 개요

발생일	년 월 일	사건접수일 (인지시점)	년 월 일	사건 유형	1:1/多:1/1:多/ 불특정다수
사건 발생기관명	000학교 / 00시 00구청		기관유형	국가기관 / 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대학교 / 각급학교	
가해자 - 피해자 관계	상급자-하급자/ 하급자-상급자/동료/사제/ 기타/확인불가 등		가해자 - 피해자 성별	남성 - 남성 남성 - 여성 여성 - 남성 여성 - 여성 확인 불가	0
특이사항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에 의한 사건인가 피해자가 다수인가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수사기관 신고 여부(신고시 신고일)				0
사건개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기관 조치사항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위자·피해자 신상정보(이름, 나이 등)는 익명 처리 가능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0.75	1	1	2.75	
양성평등문화조성 사업 (공모전 및 캠페인 운영)	4	5.5	7.5	17	
계	4.75	6.5	8.5	19.75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1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산업재해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 관 부 서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담당부서 자격증 소지 현황>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소지 자격증	비고
산업재해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강국	건설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중대재해	시설안전 관리과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1	0	0.2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1	0.2
	계	0	0	0	1	0.2

□ 원인분석

■ 재해 정보, 발생 개요

가. 재해일시 : 2024.7.5.(화) 11시

나. 재해관련 작업 유형 : 도마 야채 썰기 작업

다. 재해발생 당시 상황 : 대과 썰기 작업 중 왼쪽 검지 손가락 상단 칼 베임
사고 발생

■ 산업재해 재발방지 계획

가. 공정명 : 도마썰기 작업

나. 대책방안

1) 작업자: 칼 베임,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습득

2) 관리자: 식당 내부의 위험요소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작업자에게 주지(교육) 시키고, 도마 미끄러짐 방지 매트를 설치하여 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보완 조치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분진·흙·병원체, 고온·저온·소음과 적정기준 미준수 등에 의한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조치이행

※ 관련 매뉴얼 : [별첨15] 2023년 중대재해 예방계획(교육부, 2023.1)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5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6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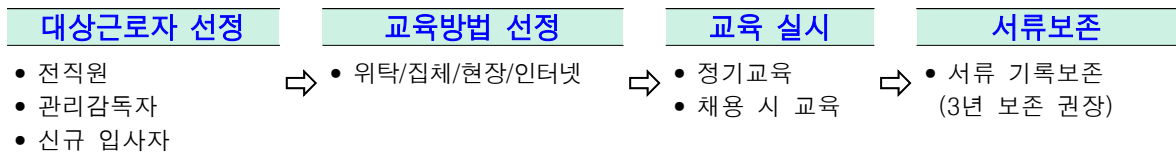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 (의무대상)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경비 및 통학보조, 조리시설 등 현업업무 종사자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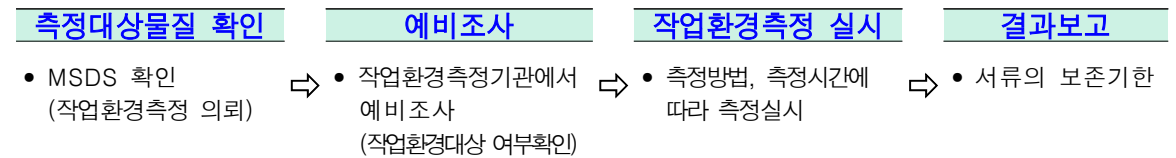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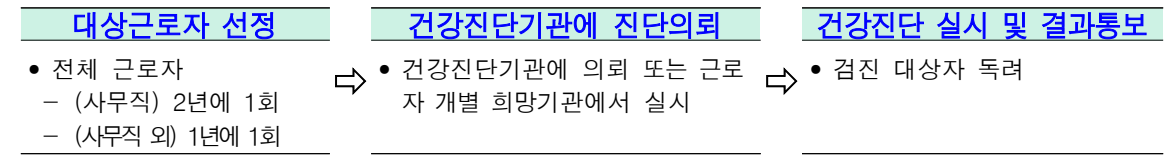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직업병 발생 예방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집단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이나 건강장해 요인을 가진 근로자의 발견과 적절한 조치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경미한 사고
- 3일 이상 휴업재해
- 중대재해(즉시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고용노동부 제출
-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 기준 1개월 이내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 수시위험성평가
-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국립대학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방향 설정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매년(연초) 관리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

대상작업 파악

- 보호구 지급 대상 유해 위험 작업 파악



보호구 선정 및 구입

- 작업에 따른 적절 보호구 선정 및 구입



보호구 지급

- 보호구 지급 및 올바른 착용 방법 교육



서류보존

- 보호구지급 대장 서류 기록보존(3년)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
-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하 조사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3년마다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시 실시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5] 2023년 중대재해 예방계획(교육부, 2023.1)

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의무주체	사업주 : 사업장 단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
보호대상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처벌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망)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그외) 안전보건조치 미준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부상자 동시 2명 이상 발생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명 이상 발생
의무 이행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 구축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및 유지·관리 8. 안전시설 및 보호구 구입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 조직별 주요업무

주체	주요 업무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총 장 (책임자)	<p><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총괄관리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감독
총 무 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
학 생 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
관 리 자	<p>< 학교에서 공사관리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담당자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등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보 건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 지도 ▪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등
안 전 관 리 위 원 회 (신설 예정)	<p><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중대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교육비 등	0.3	0.5	0.5	1.3	

2 중대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중대재해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배달학원	과장	박지원	033-760-1150, jiwon1.park@halla.ac.kr	협조부서

<담당부서 자격증 소지 현황>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소지 자격증	비고
중대재해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건설안전기사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협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0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0
인명피해	사망(실종)	0	0	0	0	0
	부상	0	0	0	0	0
	계	0	0	0	0	0

□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사고 현황 없음.

□ 안전·보 목표 및 비전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목표	교육기관 산업안전 역량강화로 재해없는 근로환경 조성
전략	경영책임자의 현장 관리감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추진과제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2.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 여부 점검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6.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7.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조치
8.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하는 담당 부서 지정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체계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으로 학교 중대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자율적으로 유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안전체계 구축
 - (환경조성) 경영책임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재해 없는 근로환경 조성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조치, 재해발생 시 재해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교육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
- ※ 관련 매뉴얼 : [별첨17] 2022년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교육부, 2022)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적극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과 개선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안전문화 조성·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특수학교, 소속기관, 본부 순)·직종별(급식, 청소, 시설 등) 유해성을 평가하고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 수행 여부를 평가기준(붙임1)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의견수렴	근로자 간담회	개선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방문 의견 청취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된 의견에 대한 현장방문과 재해예방 반영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식당 배기 후드 지속적 관리에 따른 위험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간담회에서 반영 여부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시) 외주 업체 위탁을 통한 학기별 관리 및 청소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재발방지 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미한 사고 3일 이상 휴업재해 중대재해(즉시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질병일 경우 산재 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위험성평가 수시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국가·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등 법령상의 계약절차 등을 따르고 있어 기관 임의의 기준·절차 마련에 한계가 있으나,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를 고려하여 업체 선정

- **(경쟁입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의 입찰 제한 등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 등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 추진
- **(수의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시에도 업무수행 능력뿐 아니라, 산재예방 조치 능력 고려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이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 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사고 등급에 따른 사건 종결 승인 담당자(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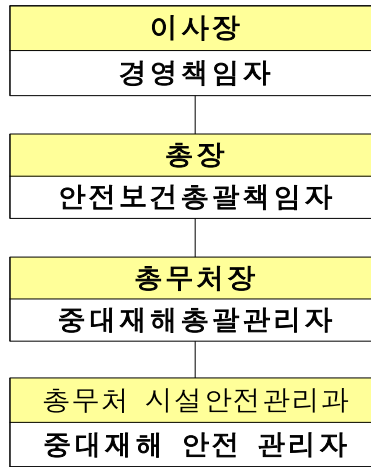
사건 종결 권한	사고 심각성 등급
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	관심 (파란색)
	주의 (노란색)
학교장(대학의 기관, 조직, 집단의 장과 협의)	경계 (주황색)
교육부장관(학교장과 협의)	심각 (빨간색)

※ 관련 매뉴얼 : [별첨15] 2023년 중대재해 예방계획(교육부, 2023.1)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참조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경영책임자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중대산업재해)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중대시민재해)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p>«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p>«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대상 : 배달학원 한라대학교



○ 역할과 책임

구분	주요 역할
경영책임자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대표 및 총괄
총괄 책임자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책임자를 보좌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의 철저 이행, 등 관련업무 총괄 ① 안전관리체계 구성 이행 여부 점검 확인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지원
총괄 관리자 (총무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안전 관리자 (총무처 시설안전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보좌 도급·용역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보좌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보좌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보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준수 기타 안전에 대한 기술적 조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보좌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4	2025	2026	합계	
식당 환경 개선	4.2	4.4	4.4	13	
위험성 평가	0.8	7.4	7.4	15.6	
안전용품 등	2	3.5	3.5	9	
계	7	15.3	15.3	37.6	

6. 기타

1 비상사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비상사태	총무과	총무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예비군대대	중대장	한상현	033-760-1461, 09204@halla.ac.kr	협조부서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국가적 난리·변고)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피해현황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계	-	-	-	-	-

□ 원인분석

- 사안 없음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충무실시계획 등 수립
 - 매년 충무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승인(11. 15한 제출, 12월 교육부 승인)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관련 매뉴얼 : [별첨18] 비상시 국민행동요령(행정안전부)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비상대비교육	-	-	-	-	
저수조관리	1.6	1.6	1.6	4.8	
보건진료소(약품)	3.5	3.5	3.5	10.5	
예비군훈련지원	6.2	6.2	6.2	18.6	
계	11.3	11.3	11.3	33.9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 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공통	대학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안전공제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대학		대학생, 교직원	학교시설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민법 & 학교안전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가입자수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건수	금액	
2025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2025-03-18 2026-03-18	3,381	7,215	21	16,007	
2025	빅히트단체 상해보험 (교직원단체보험)	2025-03-31 2026-03-31	242	24,009	-	-	

□ 보상한도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가입담보	구분	1인당 보상한도액	1사고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인)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 책임 포함	보통약관	500,000,000원	1,000,000,000원	100,000원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대물) 교직원배상책임, 시설물배상 책임 포함	보통약관	-	50,000,000원	100,000원
교내치료비	특별약관	3,000,000원	3,000,000원	0원
교외치료비	특별약관	3,000,000원	3,000,000원	0원
신입생 OT치료비	특별약관	3,000,000원	3,000,000원	0원

- 빅히트단체상해보험(교직원단체보험)

담보명	담보내역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70,000	
24시간상해 입원일당	-	10	
암치료비(Ⅲ)	-	5,000	
뇌졸증진단비	-	5,000	
금성심근경색진단비	-	5,000	
사립학교교직원 상해사망후유장해	-	190,000	
사립학교교직원 질병사망	-	5,000	
사립학교교직원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30,000	
특수운동중 상해사망후유장해	-	70,000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 [공제급여 대상] 화재(벼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면적 (A)	연간 총보험료 (B)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5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5-01-01 2025-12-31	80,392	13,172,050	0	0	0	0	
2026	교육연구 시설공제	2026-01-01 2026-12-31	80,392	15,825,790	0	0	0	0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대인	150,000	-	화재 배상책임
대물	-	1,000,000	
대인	300,000	300,000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대물	-	1,000,000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학생수 (A)	연간 총보험료 (B)	보험(공제)청구				비고
					인적		물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4	연구실 안전공제	2024-04-16 2025-04-15	1,616	3,182	0	0	0	0	
2025	연구실 안전공제	2025-04-16 2026-04-15	1415	2,739	0	0	0	0	현재 건축학과 학생 사고관련 보상이 진행중 이므로 확정 후 현황 업데이트 예정

□ 보상한도

담보대상	공제가입금액	비고
유족급여	200,000,000원	
장해급여	200,000,000원	
요양급여	2,000,000,000원	
장의비	10,000,000원	
입원급여	50,000원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10,000,000원	단, 대학(원)생에 한함

IV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1. 재난안전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재난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총무과	계장	이영우	033-760-1145, ywlee@halla.ac.kr	
	총무과	차장	이순옥	033-760-1166, so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 생	-	-	-	-
교직원	-	-	-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 생	2025.11.	14:00~14:20	전체	-
교직원	2025.11.	14:00~14:20	전체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대학 재난안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별(대비) 재난 대응 훈 수행 ▪ 대학 캠퍼스 내외 재난·사고 유형별 훈련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 대학 캠퍼스 구성원 대상 매년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사고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학생지원과	과장	이영주	033-760-1143, yjlee@hall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H)	인원	비고
학 생	2025.3.12(수)	1H	44	학부(과) M.T
학 생	2025.3.24.(월)	0.5H	33	2025학년도 문필열림제 행사
학 생	2025.5.7.(월)	1H	110	2025학년도 문필대동제 행사
학 생	2025.8.27.(수)	0.5H	25	2025학년도 제9회 총장배 H리그 축구대회
학 생	2025.9.24.(수)	1H	44	문필체전
학 생	2026.2.23.(수)	1H	43	2026학년도 신입생 Welcome Festival(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단위: 천원)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 생	2026.3.4.(수)	1H	50	-
학 생	2026.3.25.(수)	1H	50	-
학 생	2025.5.6.(수)	1H	120	-
학 생	2026.8.26.(수)	1H	50	-
학 생	2025.9.16.(수)	1H	50	-
학 생	2027.2.25.(수)	1H	50	-

구 분	추진내용
대학 학생 행사 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 학생 행사 안전 교육 실시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교육)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안전보건 교육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r	주관부서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 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현업근로자)	25.03.12~06.30	12	18	332,000원
	25.09.04~12.31	12	18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교직원(현업근로자)	26.03~06	12	18	500,000원
	26.07~12	12	18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교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연구실	시설안전관리과	전임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주관부서
안 전	시설안전관리과	겸임	한홍구	033-760-1172, hgu.han@hall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	온라인, 오프라인	1	352	1,162,000원
정기교육 1학기		1	733	
정기교육 2학기		1	1,005	681,000원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안전관리 기본)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안전의식 외)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신규교육훈련	오프라인	1	300	1,000,000
정기교육훈련	온라인, 오프라인	2	1,000(1회당)	2,000,000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안전관리 기본)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교육(안전의식 외)

5. 감염병 예방교육

감염병 예방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5.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감염병 관 리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감염병총괄	주관 부서	
	학생처	과장	신근화	033-760-1921, khshin@halla.ac.kr	감시총괄		
	학생처	직원	유지향	033-760-1346, health.care@halla.ac.kr	실무총괄		
		시설안전 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방역(소독)	협조 부서
		총무과	과장	길은아	033-760-1168, eakil@halla.ac.kr	방역(구매)	
		교무처	대리	조선영	033-760-1139, sunyoung.cho@halla.ac.kr	수업관리	
		총학생회	회장	권순성	033-760-1385	학생소통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감염병 예방 홍보	교내 홈페이지, SNS 등	상시	구성원 전체	
감염병 의심환자 초기 조치	수업중 또는 근무중 의심 환자 조치	상시	의심환자	
감염병 예방 수칙	방역당국 예방 수칙 공지	상시	구성원 전체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 홍보	• 교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공지
감염병 의심환자 초기 조치	• 교내 등교(출근) 후 의심환자가 발생되면 교내 임시건진장 소로 이동조치 후 열체크 및 문진작성 후 선별진료소 이동 조치
감염병 예방 수칙	• 교육부, 질병관청 예방수칙을 교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학내 구성원 전체에게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공지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 수	인 원	예산
감염병 예방 홍보	교내홈페이지, SNS 등	상시	구성원 전체	-
감염병 의심환자 초기 조치	수업중 또는 근무중 의심환자 조치	상시	의심환자	-
감염병 예방 수칙	방역당국 예방 수칙 공지	상시	구성원 전체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감염병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및 확산방지

5. 성범죄 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 등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성범죄	학생생활상담센터 · 양성평등상담실	센터장	조수민	033-760-1834, soomin.cho@halla.ac.kr	주관 부서
	학생생활상담센터 · 양성평등상담실	전문상담원	강은영	033-760-1196, ey.kang@halla.ac.kr	
	인권센터	센터장	이항수	033-760-1900, hslee@halla.ac.kr	
	인권센터	과장	길은아	033-760-1168, eakil@halla.ac.kr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천원)
학생	2025.3.10.(월) ~ 2025.05.09.(금)	2시간	1,490명	-
	2025.09.17.(수) ~ 2025.10.23.(금)	2시간	630명	-
교직원	2025.07.07.(월) ~ 2025.12.19.(금)	4시간	259명	-
고위직	2025.08.28.(목)	4시간	103명	1,181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 폭력예방(법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예방교육 - 학내 발생 가능한 젠더 폭력 상황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대학 문화정착을 위한 실시간 ZOOM 교육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 폭력예방(법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 학생활」 여성가족부·한국여성가족진흥원 제작 콘텐츠 활용 시청각 교육
2024학년도 동계방학 재학생 폭력예방(법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외국인 유학생 대상 「나답게, 안전하게, 함께 만드는 대 학생활(영문Ver.)」 여성가족부·한국여성가족진흥원 제작 콘텐츠 활용 시청각 교육
2024학년도 교직원 폭력예방(법정)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 강사 활용 4대 폭력 예방교육 사전 영상 제작하여 학내 E-campus 시청각 교육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 정	횟 수	인 원	예 산
학생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교육	2회	2,000명	-
교직원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1회	260명	-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1회	103명	1,150,000원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재학생 폭력예방(법정)·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및 전문 강사 활용 교육 ▪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전문 강사 활용 교육
교직원 폭력예방(법정)· 인권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콘텐츠 및 전문 강사 활용 교육 ▪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및 전문 강사 활용 교육

6. 비상대비 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비상대비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예비군대대	중대장	한상현	033-760-1461, 09204@halla.ac.kr	협조부서

□ 2025년 교육·훈련 결과

○ 추진개요

구 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예산
학 생	-	-	전체	-
교직원	-	-	전체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	-

□ 2026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예산
학생	비상대비교육	1	전체	-
교직원	비상대비교육	1	전체	-

○ 추진내용

구 분	추진내용
비상대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에서 제작한 비상대비·재난대비·민방위 교육 영상 시청 ▪ 아래 방법을 통한 비상대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홈페이지 영상 탑재 - 교직원대상 연수 및 워크숍 행사시 - 학생대상 특강 및 학부(과) 행사시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재난 네트워크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원 주 시 청	안 전 도 시 과		737-3660	자연재난, 시설물
한 국 전 력 공 사			123	
한 국 가 스 공 사			760-6600	
원 주 시 보 건 소	보 건 사 업 과		737-4065	감염병
원 주 시 보 건 소	식 품 위 생 계		737-4035	식중독
(주) 아 워 흙	위 생 업 무 지 원 팀		02-6966-9720	
미 래 창 조 과 학 부	연 구 환 경 안 전 팀		02-2110-2786	실험실 안전
교 육 사 이 버	안 전 센 터		053-714-0777	사이버 안전

□ 감염병 확산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원 주 시 보 건 소	033-737-4064	-	

□ 안전사고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팩스	
강원도 소방본부	033-249-5114	033-249-4065	
소방서	033-765-2119	-	흥업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033-902-3200	033-732-8319	
한국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0502-1200-4523	
한국전력공사	033-123	033-741-412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1640	-	응급실
보건소	033-737-5267	033-737-4899	흥업보건지소

□ 범죄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e-mail	
원주경찰서 종합상황실	033-738-0329	-	
흥업지구대	033-762-4112	-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033-735-1375	gnsunflower@naver.com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033-765-1366	hrtwlew@hanmail.net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네트워크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팩스	
강원도 소방본부	033-249-5114	033-249-4065	
소방서	033-765-2119	-	흥업119안전센터
한국전기안전공사	033-902-3200	033-732-8319	
한국가스안전공사	033-254-0019	0502-1200-4523	
한국전력공사	033-123	033-741-4123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033-741-1640	-	응급실
보건소	033-737-5267	033-737-4899	흥업보건지소

□ 비상사태

1) 평시 유관기관 네트워크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원주시청 (군·경합동상황실)	033-737-5345	-	상황실
원주경찰서 상황실	033-738-0328	-	상황실
원주시 보건소	033-737-4011	-	상황실
36사단	033-741-6114	-	교환대
36사단 108여단	033-744-8113	-	지휘통제실
36사단 108연대 1대대(원주)	033-762-7113	-	지휘통제실
연세세브란스 병원	033-741-1032	-	군지원담당

2) 상황실 운영 시

기관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e-mail	
통합상황실 (재난 전 분야)	033-760-1163	jdkim@halla.ac.kr	한라대학교 총무처
예비군대대 (군 종합상황실)	033-760-1460(1)	137zzang@halla.ac.kr	한라대학교 예비군대대
		09204@halla.ac.kr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 재난	자연 재난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② 사회 재난	사회 재난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협조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2. 안전 사고	① 대학 안전 사고	학생 안전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과	과장	이영주	033-760-1143, yilee@halla.ac.kr		
		현장실습안전	취창업지원센터	부장	최상규	033-760-1153, sgchoi@halla.ac.kr		
			교통 안전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외국인 유학생 안전	글로벌인재처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센터장	김종하	033-760-1922, h_jkmin@halla.ac.kr		
				차장	이상인	033-760-1195, dollsi@halla.ac.kr		
				과장	신근화	033-760-1921, khshin@halla.ac.kr		
	수업 안전	교무처	처장	오진성	033-760-1131, jinsungoh@halla.ac.kr			
			대리	조선영	033-760-1133, sunyoung.cho@halla.ac.kr			
	② 교육 시설 안전 사고	교육 시설 안전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연구실 안전			연구실 안전	시설안전관리과	전임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겸임	한홍구	033-760-1172, hgu.han@halla.ac.kr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감염병 안전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처	과장	신근화	033-760-1142, sgchoi@halla.ac.kr		
			학생처	과장	이영주	033-760-1143, yi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협조부서	
			교무처	대리	조선영	033-760-1139, hsseol@halla.ac.kr		
			총학생회	회장	권순성	033-760-1385		
4. 범죄	① 일반 범죄	일반 범죄	학생처	처장	김미영	033-760-1141, mykim@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지원과	과장	이영주	033-760-1143, yilee@halla.ac.kr		
	② 성범죄	성범죄	학생생활상담센터	센터장	조수민	033-760-1834, soomin.cho@halla.ac.kr	주관부서	
			학생생활상담센터	전문상담원	이지영	033-760-1196, jy2.lee@halla.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산업 재해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② 중대 재해	중대 재해	총무처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시설안전관리과	차장	김상모	033-760-1171, smkim@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대리	이강국	033-760-1172, kanggook.lee@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이장현	033-760-1173, jangh.lee@halla.ac.kr@halla.ac.kr		
			시설안전관리과	직원	한홍구	033-760-1174, hgu.han@halla.ac.kr		
배달학원	계장	박지원	033-760-1150, jiwon1.park@halla.ac.kr	협조부서				
6. 기타	① 비상 사태	비상 사태	총무과	처장	최준규	033-760-1161, jkchoi@halla.ac.kr	주관부서	
			예비군대대	중대장	한상현	033-760-1461, 09204@halla.ac.kr	협조부서	

※ 개인 휴대폰 번호 별도 관리

붙임2

위험요인별 피해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1. 재난	① 자연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사회재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③ 연구실 사고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3. 감염병확산	① 코로나-19	감염자 수	-	-	-	-	-	-	
		인명피해(사망)	-	-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② 성범죄	발생건 수	-	-	-	-	-	-	
		피해자 수	-	-	-	-	-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② 중대재해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발생건수	-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	
		인명피해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계	-	-	-	-	-	-

붙임3

위험요인별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총괄)

위험유형	대책명	연도별 예산(백만원)				비고	
		2023	2024	2025	합계		
1. 재난	① 자연재난	화재보험료	-	-	-	-	
		계	-	-	-	-	
	② 사회재난	소방시설점검용역비	-	-	-	-	
		계	-	-	-	-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교육비	-	-	-	-	
		계	-	-	-	-	
	② 교육시설안전사고	건축물안전진단용역비	-	-	-	-	
		계	-	-	-	-	
	③ 연구실사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비	-	-	-	-	
		계	-	-	-	-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학교 방역비	-	-	-	-	
		학생생활관 방역비	-	-	-	-	
		계	-	-	-	-	
4. 범죄	① 일반범죄	교육비	-	-	-	-	온라인 무료 교육
		계	-	-	-	-	
	②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문화조성 사업 (공모전 및 캠페인 운영)	-	-	-	-	
	계	-	-	-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① 산업재해	교육비	-	-	-	-	
		계	-	-	-	-	
	② 중대재해	환경개선 등	-	-	-	-	
		계	-	-	-	-	
6. 기타	① 비상사태	비상대비교육	-	-	-	-	
		저수조관리	-	-	-	-	
		보건진료소(약품)	-	-	-	-	
		예비군훈련지원	-	-	-	-	코로나로 인한 훈련 미실시
		계	-	-	-	-	

감염병 발생 시 대학 업무연속성계획 가이드라인

2026. 2.



목 차

I. 업무연속성계획 개요	97
II.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1. 감염 예방 조치	98
2.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100
III. 업무연속성계획의 준비	
1. 비상조직체계 정비	101
2. 핵심기능, 필수 및 가용자원의 파악	102
3.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102
4. 위기상황 대응	103
5. 복구 및 사후조치	108
[붙임1]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109
[붙임2] 대면수업 진행 시 방역점검 체크리스트	110
[붙임3] 코로나19 특이상황 발생 보고 서식	113
[붙임4] 양식 모음	114

I.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개요

- (정의) 위기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대학의 핵심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대응체계
- (수립 목적)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여 ①교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을 보호하고, ②대학 기능의 마비를 방지하여 대학의 손실 최소화
- 주요내용

① 비상조직체계 구성 및 역할분담	비상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를 미리 구성하고, 팀별·개인별 역할을 명확히 규정
② 대학의 핵심 기능 분석	위기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는 핵심 업무와 필수 수업의 종류 및 범위를 확정
③ 필요 자원 파악 및 부족 시 대응계획 수립	핵심기능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력과 필수 자원의 종류·수량을 파악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대체수급계획 마련
④ 소통계획의 수립	교직원, 관련업체 등 내·외부 연락망을 준비하고, 교직원 뿐 아니라 외부업체 관계자에게도 행동지침 등을 교육
⑤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숙지	기관 시설 소독·청결관리 및 소독제 등 필요한 물품을 구비, 감염병 발생 시 대응방법 등을 숙지

- (가동 기준) 학기 시작 전 비상대응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학내 공유하고, 정부의 비상계획 발표, 학내 확진자 발생률에 따라 업무연속성계획을 가동

BCP 수립단계	학기 시작 전 비상대응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학내 공유
BCP 가동 준비	중대본 위험도 평가 결과 10주 연속 전국 '매우높음' 결과 유지
BCP 가동	방역당국의 BCP 작동 요청 또는 교내 확진자 발생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비상조직체계 회의 후 BCP 가동

Ⅱ. 교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1 감염 예방 조치

- ◆ 교내 밀집도를 줄여 환자 발생 시 추가 전파로 인한 피해 최소화
- ◆ 관련 지침을 확인하고 시설 소독 등을 통해 교내 감염병 확산 방지

1. 학생 및 교직원 보호를 위한 감염 예방 조치사항

- 교내 감염병관리자 혹은 방역관리자를 통한 상시적 감염 예방 조치 및 점검
 - 학생 및 교직원의 일별 건강 상태 확인 및 감염 예방 홍보 등
- 평시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등 교내 밀집도 최소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 비대면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평시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비상시 핵심 업무 지속 수행을 지원
- 출근 중 감염의 우려가 있을 시를 대비한 대체근무지 지정 고려
- 대면회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비대면 회의를 활성화하는 등 업무과정 중 접촉 최소화

< 교내 종사자 감염 예방 요령 >

내·외부 접촉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격회의(화상회의 등),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출장·회의·워크숍·교육 등 축소 운영- 사적 모임 자제 및 캠퍼스 내 휴게 공간에서 모이지 않도록 함- 대면 회의가 불가피할 경우 가능한 큰 회의실을 선택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미터 이상 유지) 악수 또는 포옹을 삼가고, 주기적 환기 및 회의시간 단축- 방문객 등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 빈도가 높은 경우 투명 가림막 등 설치
----------------------------	--

2. 개인 및 시설 방역·소독 관리

○ 교내 방역·위생관리 철저

- 휴게실과 탕비실 등 대기실이나 공공장소에 **공동사용 물품 미비치**
- 매 시간 창문을 열어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하고, 자연 환기가 어려울 때는 **공조시설을 활용하여 외기가 충분히 유입되도록** 조치함
- **위생물품**(비누, 손세정제, 티슈, 보건용마스크 등)은 **사용하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충분히 제공**

○ 소독 관리

- 권장 사용법 및 주의사항은 소독제 성분마다 다르므로, 제품별 설명서에 따라 선택
- 소독제는 소독 목적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여야 하고 소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은 종류의 소독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사용

※ 식품의약품안전처(KFDA)에서 허가한 소독제 사용(<http://ezdrug.mfds.go.kr>)

< 소독약품 안전 사용 수칙 >

-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읽어 본 후 사용할 것
- 다른 소독제와 혼합하거나 병행하여 사용하지 말 것
- 희석하여 사용 시 희석 비율을 반드시 지킬 것
- 사용 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 소독약에 사람이 과다 노출 시 즉시 물로 씻어 낼 것
- 소독약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

2

감염병 의심·확진자 발생 시 대응

- ◆ **감염병 확진자 발생 시 대응원칙**을 세우고 교내 접촉자에 대한 신속 관리를 통해 추가 전파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
 - **의심 증상 시 출근·등교하지 않고 상담 등 교내 전파 사전 차단 조치**
- ◆ 방역당국의 방침에 따른 신속 조치를 위한 상시 연락체계 유지

1. 사전 준비 사항

- 감염병 총괄관리자 및 의심·확진환자에 대한 전담관리인 지정하고, 정부의 방역 대응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여 대응
-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근무형태(개인별 혹은 부서별) 및 출석 관리 방안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혼선 최소화
- 의심·확진자 발생 시 대응지침(소독범위, 폐쇄범위 등) 마련

<의심·확진자 발생 시 대응요령>

의심자	<p>(접수) 감염병 증상을 보이는 학생, 직원 또는 방문객 발생 시, 즉시 감염병 관리자에게 신고</p> <p>(검사) 의심환자 발견 시 즉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p> <p>(격리) 의심환자는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 또는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결과는 감염병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p> <p>(접촉자) 의심환자와 개인보호구 없이 접촉한 사람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동반식사 지양</p>
확진자	<p>(공지) 확진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학내 구성원에게 공지</p> <p>(접촉자 파악) 확진자와 접촉(마스크를 벗고 대화 혹은 식사)한 사람을 파악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재택근무 및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 필요시 보건당국에 제출</p> <p>(소독) 확진자가 머물렀던 공간은 마스크와 일회용장갑 등을 착용 후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p>

※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대응요령을 개정하고 공지할 수 있도록 조치

2. 의심·확진자 발생 시

-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파악하고 교내 확진자 이동경로 등을 공지하여 접촉자의 신속한 검사를 유도
- ※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비대면 수업 등으로 전환하여 다른 교내 구성원과 접촉을 최소화
 - 기 지정한 임시격리장소를 활용하여 교내 감염예방 조치 시행
- 확진자 발생 상황을 교육부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 보고
- 소독제 종류 및 소독 범위, 환기 시간, 폐쇄 범위 등을 관련 대응 지침에 근거하여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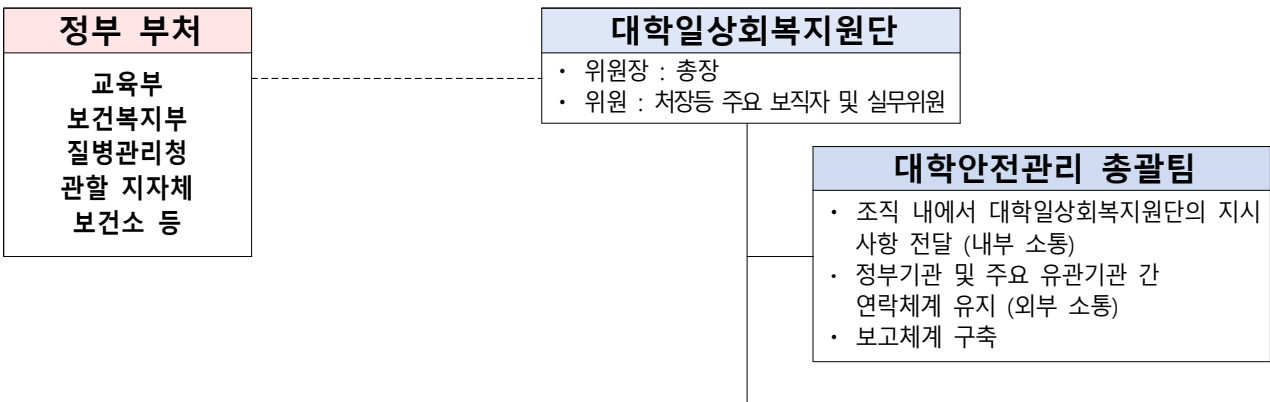
Ⅲ. 업무연속성계획의 준비

1 비상조직체계 정비

-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를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성
- ◆ 감염병 발생 시 각 팀별 역할·책임·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즉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아래 비상조직체계에 따른, 팀·개인별 임무 숙지를 위한 교육·안내 실시([양식1] 참고)

< 감염병 발생 대응 체계 및 역할 >



대응팀				
감염관리 총괄팀	방역·소독·검역 관리팀	학사운영팀	복구지원팀	홍보·소통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CP 수행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 환자 발생 현황 모니터링 · 학생 및 교직원의 감염관리 · 대면수업 중 방역 수칙 준수여부 관리 · 감염병 발생 대비 필요 물품 및 서비스 관리 (위생 소독용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발생 대비 방역 및 소독 담당 · 건물출입구 검역소 근무자 관리 · 방역물품 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비대면 수업 전환 기준 설정 · 원격수업 질 관리 · 수업별 진행과정 및 애로사항 점검 · 교수자 확진·격리로 인한 수업 공백 시 대체 강의자 섭외 또는 비대면 수업 전환 준비 · 외국인 유학생 수업관리 및 방역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정보 백업 및 스토리지 관리 · 결근 교직원의 복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포털, 커뮤니티, SNS, 문자메세지, 이메일 등을 통해 학내 확진 및 조치 상황 공유 ·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 지속 · 교내 입주업체에 방역사항 전달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처 학생지원과 · 보건진료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무처 시설안전관리과 · 총무처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무처 · 한국어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처리과 · 교무처 · 총무처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자치회 · 보건진료소 · 창업보육센터 · 원주에너지기술센터

2

핵심기능, 필수 및 가용자원의 파악

- ◆ 대학의 핵심기능, 필수 업무, 핵심인력, 필요자원을 파악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 위기 시 즉각적·효율적인 대응
-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업무와 인력, 가용자원을 파악하여 핵심 업무 유지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

1. 주요 기능 및 핵심인력 파악([양식2] 참고)

- 대학의 주요 기능 중 비상계획 발동 시 집중·일시 중단할 기능 선별
 - ※ (예시) ① 단과대·학과별 대면수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할 수업 지정 ② 연구실 별 핵심인력 파악 및 재택근무·교대근무 계획 수립
- 대학 본부의 업무 중 핵심 업무부서 및 핵심인력을 파악*하고, 집단 결근 상황에 대비
 - 핵심인력 부재 시 대체인력 지정, 권한 위임 및 업무 승계에 대한 원칙 결정

2. 필수 및 가용 자원([양식3] 참고)

- 핵심기능의 지속에 필요한 필수자원과 기타자원의 종류를 파악
 - ※ 전면 비대면 전환 시 실시간 원격수업 진행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확인 및 부족한 설비 선제적 구축
- 교내 핵심정보 및 기타 정보를 백업하고,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의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연락망 구축 및 소통계획 수립

- ◆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여 위기 상황에서의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 ◆ 전 교직원이 감염병 대응에 동참하도록 감염병 기본 지식과 행동지침 등에 대한 안내·교육 실시

1. 조직 내·외 비상연락망 구축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상태 확인과 감염병 발생 시 대응 지침을 전달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온·오프라인으로 구축·정비
- 교내 외주업체 등 교내·외 발병 상황에 관한 정보 교환을 위해 비상연락망 구축
 - 교내 외주업체: 창업보육센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 원주시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 정부 기관 등의 연락망 관리 및 지속적인 정보·공지사항 확인

2. 원활한 소통 유지

- 교내 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 시, 교내 구성원에게 캠퍼스 내 확산 동향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체계(문자메시지 발송, 홈페이지 공지 등) 구축
- 확진자 발생정보 제공의 목적은 접촉자들이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는 등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것으로 해당 목적에 따른 정보 제공

4 위기상황 대응

- ◆ 학내 확진자 급증, 대규모 결근, 비대면 전환 확대 등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가정하여 각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확진자 발생 시 전체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에 공유하여 실제 상황 발생 시 혼란 최소화
- ◆ 정부지침 등 관련 지침·규정을 확인하고 캠퍼스 내 청결 유지 및 자체 소독조치 등을 통해 학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

1. 학내 업무연속성계획 및 발동기준 마련

- (학내 비상계획 수립)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급증 시 시행할 비상대응계획인 업무연속성 계획 사전수립 및 학내 공유
 - 비상상황에도 유지해야할 필수·핵심기능을 설정*하고, 유행 상황에 따라 단계적·탄력적으로 조치([양식4~5] 참고)

- * ① 비상상황 발생 시 **대면수업 진행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 사전지정**
- ② 비상상황 단계별 **필수근무자(출근인력) 범위 또는 비율 설정**
- ③ 비상상황 단계별 **개방/폐쇄 건물, 출입통제 대상(외부인→필수인력 외 모든 인원) 설정**

< 업무연속성 계획 >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① 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1단계 비상계획 발동	⇒	학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1일 대면수업 허용 (1순위 대면수업 요일) •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
② 학내 감염상황	해당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1주 기준)				학내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권장 • 학내·외 행사 연기, 교육활동 외 학내 잔류시간 최소화
① 전체 방역상황	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	⇒	2단계 비상계획 발동	⇒	학사	•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
② 학내 감염상황	해당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1주 기준)				학내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 학내·외 행사 금지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 •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
					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 •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

- * 공통사항: 매주 금요일 "이러닝 데이"로 지정 및 원격수업만 허용
교양 선택은 비대면(LMS권장) 원칙, (코로나 완화)전면 대면 시 대면수업 전환(금요일 제외)
- * 기본(현재수준): 주 2일 대면수업 허용(1순위 및 2순위 대면수업 요일)

- (비상계획 발동) BCP발동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 일상회복지원단" 논의를 거쳐 시점·기간, 내용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발동
- (발동 후 조치) BCP 발동 시 시점·기간, 내용 등을 정하여 학내 공지
- 대면수업 재개 시점 또는 재개 결정 시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의 학사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2. 세부 위기상황별 시나리오 구성(양식6) 참고)

[수업 관리]

상황㉠ 학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비대면 전환 불가피

- 대학 내 자체 LMS 사용 시, LMS 수용 가능인원을 선제적으로 확대하여 시스템 마비방지
 - 비대면 전면 전환에 대비하여 시스템 사전 점검 및 원격수업 기술 지원 인력을 확보
- 단과대·학과별 대면수업이 필수적인 수업*을 순위별로 나열 후 중요도가 낮은 순으로 비대면 전환 실시
 - *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실험·실습수업, 취업 및 자격증 취득과 연관도가 높은 수업 등
 - 비상계획 발동에 따른 비대면 전환 여부를 학기 초에 공지하여 학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 비대면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
- 학생 혼선 방지를 위한 안내·홍보 시스템 구축 및 학생 문의 응대 창구 마련

상황㉡ 실험 실습실 확진자 발생 후 다수 학생 의심증상 발현 시 방안

- 대면수업 중단 기준 도달 전·후의 학습결손 방지 방안 마련
 - (도달 전)
 - 실험실습은 지속하되, 결석자에 대한 대체출석, 출석인정 방법 마련,
 - 개별 사용이 가능하도록 실험실습 용품 구비 및 수업 방법 마련(팀별 실습 지양)
 - (도달 후) 비대면 수업 가능한 교과목인 경우 재료용품을 배부하여 비대면 전환, 수업 중단 시 대체과제, 보충자료 배부 등을 통한 출석인정 방안 강구
- 실험·실습 중단 기준 해제 후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 마련
 - 실습 참여 학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공지기간 설정
 - 실습실 및 실습용품 방역 방법, 시기 등 기준 마련

상황㉢ 학생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결석자가 증가하여 교육활동 지속 불가

-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 집단 결석으로 인한 수업중단 기준(예. 해당 수업 결석률 20~50%) 결정
- 수업중단 기준 도달 전·후의 학습결손 방지 방안 마련
 - (도달 전) 수업은 지속하되, 결석자에 대한 대체출석 인정방법 마련
 - (도달 후) 수업 중단 후 대체과제, 보충자료 배부 등을 통한 학점 인정 방안 강구
- 수업중단 기준 해제 후 대면수업 재개를 위한 방안 마련
 - 수업 참여 학생들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 공지기간 설정

상황④ 교수자 격리·확진으로 인한 수업 공백 발생

- 교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재택에서 실시간 원격 수업 가능여부 판단
 - 교수자 별 재택에서 실시간 원격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설비(노트북, 웹캠, 마이크 등)가 구비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대여 서비스 운영
- 대체 강의를 섭외를 위한 후보명단 선제적 마련 및 인근학교의 동일·유사학과와 공유
- 직전학기 또는 직전년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

[행정업무 및 교직원 복무 관리]

상황⑤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규모 결근

- 감염병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대응
 - 재택근무, 원격근무, 교대근무 등 기관 내 밀집도를 줄일 수 있는 제도를 평시에 운영
 - 교직원의 건강정보 관리
- 핵심 교직원의 근무가능 여부, 출근 가능 교직원 수 파악
 - 부족한 인력의 수와 업무분야를 확인, 대체인력 확보 (대행자 지정, 권한 위임 등)
-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
 - 교직원 전원 재택근무에 대비하여 필요 설비 및 시스템(노트북, 원격근무 시스템 가입 및 설치 등) 관리
 - 유사시 적용할 대체 근무자 사전 지정
 - 대안적으로 활용할 근무 장소(대체 근무지) 및 근무 시간의 조정(탄력근로제) 등
- 학내 시설관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방역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 일원화, 시설 이용가능인원 제한, 일부 다중이용시설 건물 폐쇄 등 조치 시행

상황⑥ 학내 집단감염 발생 시 안내 방안

- 대학 홈페이지 및 학생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내용 신속히 공지
 - 학내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된 학생 집단결석으로 인한 수업 중단 기준 재안내
 - 수업운영 방식 변경(대면↔비대면) 내용 안내
 - 현재 학내 집단감염 및 조치사항(발병 인원, 발생경로, 대학조치 및 진행사항 등) 안내
- 집단감염으로 인한 BCP 발동 시, BCP발동 기간 및 해제 예정일 안내
 - BCP발동 단계에 따른 학내 시설 출입 제한·통제 사항 및 기간 안내
 - BCP발동에 따른 학내 근무인력 축소 시 민원처리 방안 및 행정부서 근무현황 안내
 - ※ (예시 1) BCP 1단계 발령으로 본 대학 전체 행정부서의 근무 인원이 2/3이하로 운영됨에 따라 민원 처리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 (예시 2) BCP 2단계 발령으로 대학 내 증명서 발급 등이 불가하여 동사무소를 통한 FAX민원 및 온라인 발급만 가능함

상황㉗ 최고 의사결정자 집단 감염으로 인한 내부결재 지연

- 증상별 직무 대행자 선정
 - (무증상 또는 경증 시) 교내 전자결재시스템 결재 및 메신저 보고체제 운영
 - (중증 시) 직제규정에 의한 직무대행 선임 및 후결(중요 사항 등)
 - ※ 자금결제는 수입·지출관 직무대리 지정
- 의사 결정 회의
 - 서면 회의 또는 비대면 원격 회의
- 일상적 업무는 부서 내 차상위자 대행 및 전결체제 운영

[시설 관리]

상황㉘ 학생생활관(기숙사)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 (사전 준비사항1)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에 원활하게 입소할 수 있도록 소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사전 협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5판) '재택치료 예외 대상자 중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세어하우스)'에 기숙사가 해당(방역당국 확인완료)
- (사전 준비사항2) 밀접접촉자 격리를 위한 자가 격리자 격리실 확보
 - 밀접접촉자 증가에 대비하여 세면실·샤워실 등이 갖춰진 1인 격리실 사전 확보
 - 밀접접촉자 발생 시 식사, 생필품 지원 체계 마련
- 기숙사 내 확진자 발생 시, 기숙사 내 공용시설 사용 제한
 -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폐쇄
 - 복도, 세탁실 등 환기 및 소독 강화
- 기숙사 내 감염병 지속 확산 시, 사생 귀가 권고(근거리 거주자 등 우선권고)
 - 부모 등 가족 차량 이용 권고(대중교통 이용 시 KF94마스크 착용 확인)
 - 귀가자 기숙사비 환불 기준 수립 및 안내

상황㉙ 비상계획 발동으로 인한 시설 폐쇄 시 시설 관리 방안

- 폐쇄 건물 출입통제 강화를 통해 관리자 외 출입 엄금
- 시설관리 점검자 지정을 통한 지속적인 시설 점검
 - 시설관리 필수인력 지정(일별 또는 주별)을 통한 주기적 순찰 진행
 - 안전관리자 지정을 통한 폐쇄 건물 화재 대응 방안 등 안전관리방안 마련
- 캠퍼스 내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강화

5

복구 및 사후조치

- ◆ 기존 비상조직체계를 복구활동 중심으로 전환
- ◆ 복구에 필요한 자원, 비용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 배정

1. 복구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 발생 후 운영되던 비상조직체계를 복구 중심으로 개편
- 복구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복구팀 별 복구활동계획과 필요자원 및 비용 등을 분석
- 수립된 업무연속성계획 수행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2. 대면수업 재개 계획

- 비상상황에 따른 수업중단 기준 해제 후 대면 수업 재개 방안 마련
 - 대면수업 재개 시점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의 학사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3. 교내 구성원 복귀 계획

- 감염병 완치 등으로 인해 등교 또는 결근사유가 없어진 학생 또는 교직원 정상적 복귀

	주요내용	완료	진행	미착수
비상조직체계 정비				
1	비상시 즉시 가동할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였는가?			
2	비상조직을 구성하는 대응팀과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핵심기능 및 가용자원 파악				
3	비상계획 발동 시 대면 진행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4	비상계획 단계별 개방/폐쇄할 건물 및 출입통제 대상을 설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5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업무를 파악하고, 핵심인력 및 조직의 리더 부재 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는가?			
6	대학의 핵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있는가?			
7	방역·위생 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8	업무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는가?			
연락망 구축 및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9	교직원, 협력업체, 재적생 등 연락처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10	「대학 코로나19 방역관리 안내」 등 정부의 각종 지침에 대해 확인하고 숙지하였는가?			
11	대학 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기상황 대응				
12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렸는가?			
13	방역관리 다중이용 시설 관리 등 대학 내 감염 방지 대책이 있는가?			
14	대규모 결근 등 발생 시 실행 가능한 대체 복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복구 및 사후조치				
15	핵심기능,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진행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6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의 복귀 절차 등 인력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공통	1 대학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대학일상회복지원단(구-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을 구성(전환) 운영중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코로나19 관련 생활·예방 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일일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가? ※ (예시) 대학 자체 제작 앱, 교육부 자가진단앱 활용 여부 또는 발열체크 대장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지자체, 보건소, (대학)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예시) 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대학 내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예시)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상황에 맞게 귀가, 대학보건실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유증상자, 확진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은 적절한가? ※ 상황 보고, 확진자 동선 파악, 이용 시설 폐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각종 행사는 대학 행사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 방역관리기관(예시: 일상회복지원단) 등의 승인 후 추진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 발열체크를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등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유증상자 발생 시 자체검사, 기숙사 정기검사, 대면수업 전 선제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구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강의실 실험실	13 교수, 조교,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마스크 미 착용 시 입실 불가를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수업 前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발열체크 대장 등을 작성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17 소독을 실시하는가?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손 소독제는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9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의 청소·환기 상태는 적절한가?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4m ² 당 1명을 유지하되, 실험·실습실의 경우 4m ² →2m ² 로 조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도서관	22 도서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무인 대출·반납기 등의 운영을 통한 비대면 장서 대출 실시, 장서의 반납 후 소독 실시, 전자책 이용을 권장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4 열람실 등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5 도서관 내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동아리실 등	26 동아리실,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을 개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7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는가? ※ 동아리실 이용 인원, 마스크 착용, 취식 제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8 손 소독제 등은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9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통학(근) 버스	30 운전자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등을 안내하는가? ※ 의심 증상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차량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식당	32 식당 운영 前 소독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손 소독제, 손 세정제는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36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공통)	37 기숙사 입소 전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하는가? ※ 결핵검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8 기숙사 입소 시 2일 이내 선별진료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9 기숙사 입소자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하는가? ※ 발열·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0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1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 소독제, 화장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였는가? ※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2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하는가? ※ 출입문, 엘리베이터,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기숙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가? ※ 발열체크기 설치 및 관리요원 배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4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가? ※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기숙사 내 유증상자 또는 밀접접촉자 발생에 대비한 유희 공간(출입구, 세면실, 화장실 등이 분리된 격리 시설)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식당)	46 교내(기숙사) 식당 운영 前 소독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7 교내(기숙사)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8 교내(기숙사)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9 교내(기숙사)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붙임3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 서식

□ 확진자 현황 ('22.2.5부터 누적 작성)

연번	유형	지역	대학명(캠퍼스명)	성명	성별	출생년도	확진일자	감염경로	기숙사 이용 여부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작성			집단감염 현황	보고일자	비고
										국적	비자유형	입국일자			
1			000대학교(00캠퍼스)			0000	0000-00-00		O			0000-00-00	00대 집단감염1(최초)	0000-00-00	기보고
2									X				00대 집단감염1(추가)		신규보고
3															
4															

□ 집단감염 세부 현황

연번	집단감염	항목	세부내용
1	00대 집단감염1 (총 00명)	① 세부 발생 현황	(예시) - 태권도부 전지훈련(1.9~1.11,0일간)/세종지역(00명)을 다녀온 후 00명 집단 감염 발생 - 동일 기숙사(4인 1실)를 사용하는 학생 간 집단 감염 발생 - 여학연수 과정(1.10~2.10,0일간)/000명/1반 20명)을 수강을 하고 있는 학생·교직원 간 집단 감염 발생 - 동일 연구소를 사용한 교직원 간 집단 감염 발생
		② 관련자 검사 현황	(예시) - 총 185명(기숙사 50명, 대면수업 125명, 교수 10명) 검사 실시(00.00~00.00.) - 운동부 전지훈련 00명 전수 검사 실시(00.00~00.00.)
		③ 대학 및 지자체 조치 현황	(예시) - 기숙사 및 강의실 폐쇄 및 방역 실시 - 전면 비대면 수업 전환(5.11.~5.18. 1주간)
2	00대 집단감염2 (총 00명)	① 세부 발생 현황	
		② 관련자 검사 현황	
		③ 대학 및 지자체 조치 현황	

[양식1] BCP 업무 대응체제

구분	직함	이름	주요담당업무
대학일상회복 지원단	위원장	김응권	총괄관리자
	부위원장	김미영	감염병관리 총괄책임
대학안전관리 총괄팀	재난·산업·중대재해 총괄관리자	최준규	대학일상회복지원단의 지시사항 전달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보고체계 구축
감염병관리 총괄팀	팀장	신근화	환자 발생 현황 모니터링
	팀원	이영주	BCP 수행과정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팀원	유지향	학생 및 교직원 감염관리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
		위생, 소독용품 관리	
방역·소독·검역 관리팀	팀장	김상모	방역 및 소독 담당
	팀원	박선자	검역소 근무자 관리
	팀원	김종덕	방역 물품 구매
학사운영팀	팀장	김화영	수업별 진행과정 점검
			교수자 확진이나 격리시 대체강의자 섭외 또는 비대면 수업 준비
	팀원	조선영	대면·비대면 수업 전환 기준 설정 원격수업 질 관리
	팀원	이상인	외국인유학생 수업관리 및 방역관리
복구지원팀	팀장	이선애	주요정보 백업, 스토리지 관리
	팀원	김화영	결근 교원 복귀 관리
	팀원	박선자	결근 직원 복귀 관리
홍보·소통팀	팀장	강소영	개인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
	팀원 (총학생회 회장)	-	학내 확진 및 조치 상황 공유 (학내포털, 커뮤니티, SNS 등)
	팀원	함영은	교내 입주업체 방역사항 전달관리
	팀원	조희숙	

[양식2] 부서·학부(과) 핵심업무 및 비상시 대체인력

연번	부서명 (처-팀)	업무구분 및 담당자		비상시 대체인력			외부업체 연관 시		
		주요 업무명	보직자명	핵심 업무	비상시 대체근무자 (결재권포함)	권한 위임 및 업무 승계 범위	업체명	담당자명	연락처
1	기획처	기획처 업무 총괄	조용남 처장	예산, 평가, 규정, 정보공시, 교류	조태화 부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전체	-	-	-
2	교무처	교무처 업무 총괄	이용희 처장	교원인사, 학사, 수업, 학적	김화영 차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전체	-	-	-
3	학생처	학생처 업무 총괄	김미영 처장	학생지도, 장학	신근화 과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감염병, 보건, 통학	이영주 과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4	총무처	총무처 업무 총괄	최준규 처장	구매, 회계, 인사, 급여, 출납, 급식	길은아 과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5	입학처	입학처 업무 총괄	김종하 처장	입학, 대내외 홍보, 언론보도	김성훈 실장 (입학전략실장)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6	학술정보원 정보처리과	정보처리과 총괄	손병헌 원장	학사정보, 보안정보	이선애 직원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에스지 시스템	신승환	033-760 -1149
7	대학원	대학원 업무 총괄	윤혜영 원장	학사, 수업, 학적, 입학	유환호 직원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8	각 학부(과)	각 학부(과) 업무 총괄	각 학부(과)장	대면, 비대면 수업 운영	학부(과) 조교	본교 위임전결 규정에 명시된 사항 중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항	-	-	-

[양식3] 필수 및 가용자원 현황

관련 부서/학과	시설/장비 구분	관리부서	필수자재	필요량(일 또는 주단위)	현재 비축량	관련업체	비상 상황시 대처방안
각 학부(과)	강의실	각 학부(과) 사무실	PC, 마이크	-	-	-	강의실 출입문 개방 관리
해당 학부(과)	실습실	해당 학부(과)	실습용 기자재	-	-	-	실습실 폐쇄
신소재화학공학과	실험실	신소재화학공학과 사무실	실습용 약품	-	-	-	실험실 폐쇄
정보처리과	서버, PC,	정보처리과	서버, PC 등	-	-	케이탑솔루션	핵심인력 1~2명 현장 근무 배치
총무처 시설안전관리과	통신시설	총무처 시설안전관리과	통신시설	-	-	-	-

[양식5] 비상상황 발생 시 폐쇄 건물 목록

연번	건물명	주요 시설 및 기능	폐쇄 시기
1	도서관	도서관, 열람실 및 스터디룸	1단계 비상상황 발동 시
2	학생회관	학생 복지시설(동아리방 등)	
3	한라관, 창조관, 진리관, 운곡관, 산학협력관	강의실	2단계 비상상황 발동 시
4	교내식당	교직원, 학생 식사 제공	2단계 격상 시 학생 식당은 폐쇄하고, 교직원 식당만 운영

[양식6] 예상 위기 대응 시나리오

상황④ 교수자 격리·확진으로 인한 수업 공백 발생

- 교수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원격수업 진행 가능여부 확인
 - (밀접접촉으로 인한 격리자,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원격수업 진행 결정
 - (중증) 대체과제 또는 직전학기·작년 수업자료로 임시 대체
- 원격수업 전환 시 업무체계도
 - ① 수강생 대상 원격수업 전환 안내(학교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메시지 발송)

<안내 예시문>

「기초 화학실습」 교수자 김OO교수가 코로나-19 확진되어 00.00.(월)~00.00.(토) 해당 수업은 불가피하게 1주일 간 원격수업으로 실시합니다. 교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00.00.(일)까지 대면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여 재 안내 하겠습니다.

- ② 교수자가 재택에서 원격수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
- ③ 각 학부(과) 감염병관리자(학부(과)장)가 교수자 건강 상태 매일 유선 확인 및 이상상황 발생 시 보고
- ④ 교수자 격리 해제 전날 건강상태 최종 확인 및 대면수업 재개여부 결정 후 학내 공지

[양식7] 학내 비상대응 가동 시 안내 메시지 예시 및 안내 체계

<한라대학교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대응조치 안내>

교내 주간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학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00.00.~00.00. 1주일 간 일부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일부 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www.halla.ac.kr)를 확인 바랍니다.

00.00. 재학생 확진 상황을 고려하여 대응조치 연장·중단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상황시 주요 대응 / 조치사항

※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

- 경보 수준의 돌발(20cm 이상 폭설시)
: 기상 특보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언론 발표 등을 고려하여 기상 상황 파악 후 등교 시간(휴업 등) 조정 조치
-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직접 등교시간 조정 등 수업 대책 시행 가능

※ 「재난유형별 대책반 현장조치 매뉴얼」

- 재난 분야 : 풍수해, 감염병, 폭염, 황사
- 적용 시기 : 위기경보 '관심'~'경계' 단계
- 조치 사항
 - 일반 상황 : 담당처장 ↔ 담당부서 ↔ 대책반 근무자
↓
유관기관
 - 긴급 상황 : 총괄자 ↔ 총 장
(등·하교 시간 조정, 학생 지도 및 안전 관리)
- 재난 대응 협조회의 개최
 - 경보(특보) 접수시 업무 관련 부서로 구성
 - 재난 특성, 경로, 상태 등의 정보 공유 후 협조 및 해결 방안을 강구
- 필요시 재난 방송 협조 조치
 - 시설안전관리과 협조요청 → 교내 방송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 요령

구 분	임무 및 근무요령
1단계 (주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중앙사고수습본부(상황실)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근무 ● 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학생/교직원에게 전파
2·3단계 (경계·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 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 기타 재해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체계 : 관리자 → 총괄자 → 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상황시 : 관리자 → 총장, 총괄자에게 즉시 보고 ● 근무지 : 해당부서 사무실 ● 비상근무체제로 변경 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 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개인위생 준수 요령

올바른 손씻기 요령

건강을 위한 **3**가지 약속! ■ 자주 씻어요 ■ 올바르게 씻어요 ■ 깨끗하게 씻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5**분부터 실천하세요!



1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2단계



손가락을 마주 잡고 문질러 줍니다

3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 대고 문질러 줍니다

4단계



엄지 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목을 끼고 문질러 줍니다

6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올바른 기침예절

하나

기침, 재채기 할 때 휴지나 손수건은 필수!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둘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가리기

만약, 휴지나 손수건이 없다면 옷 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세요.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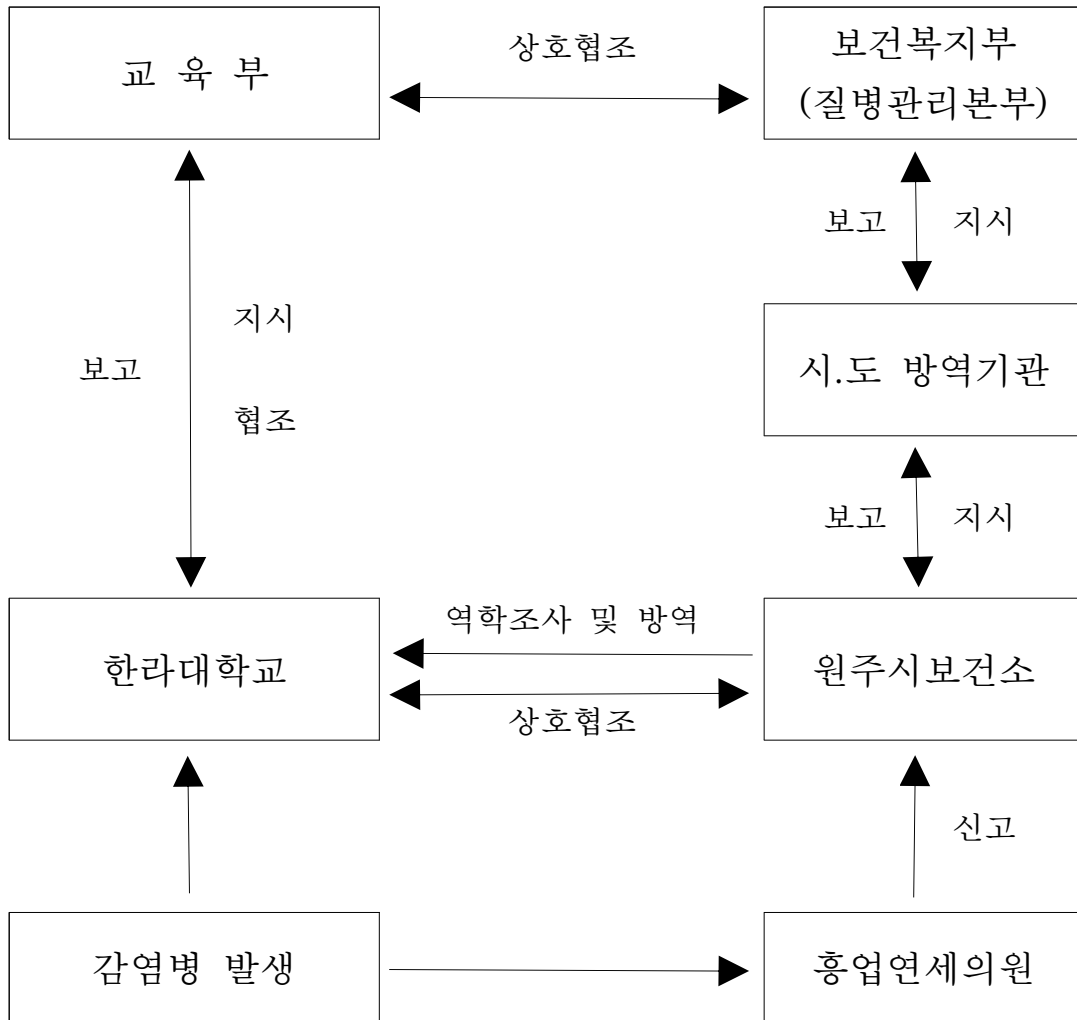
기침,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씻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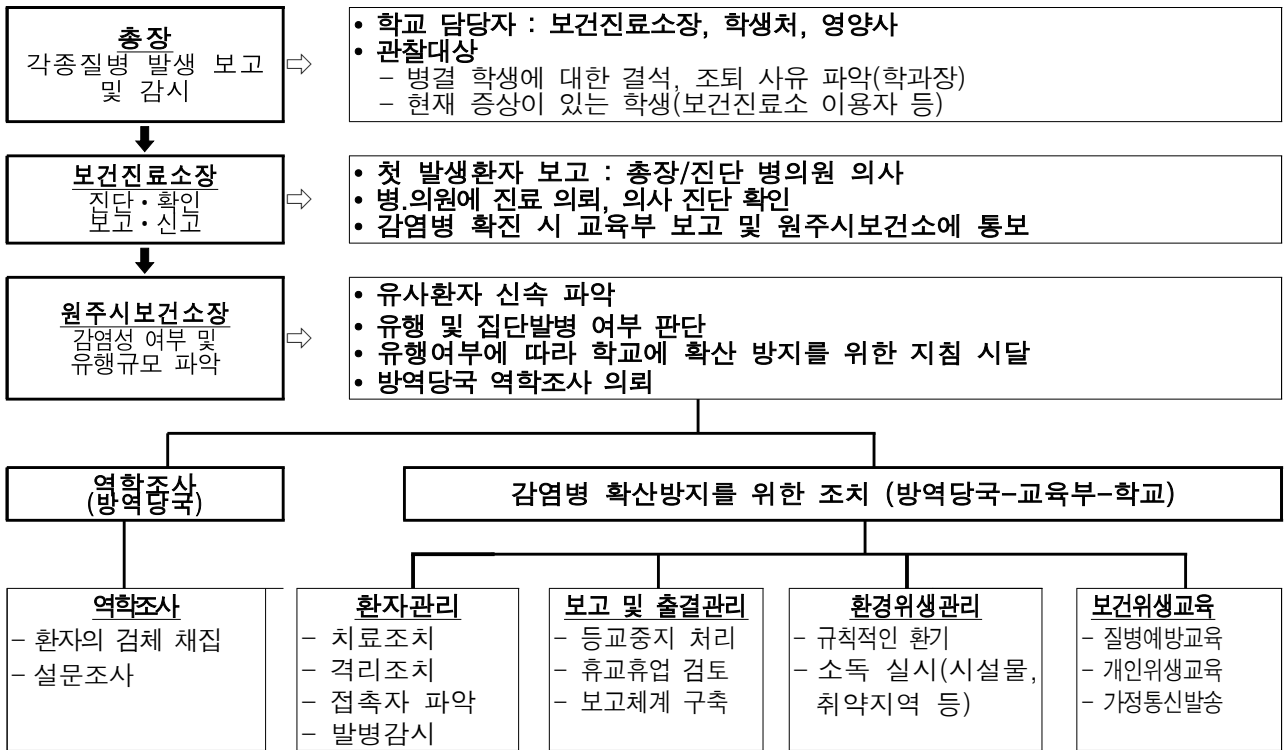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발생시 대응 체계

○ 기관간 관리/보고 체계



○ 평상시 학교 감염병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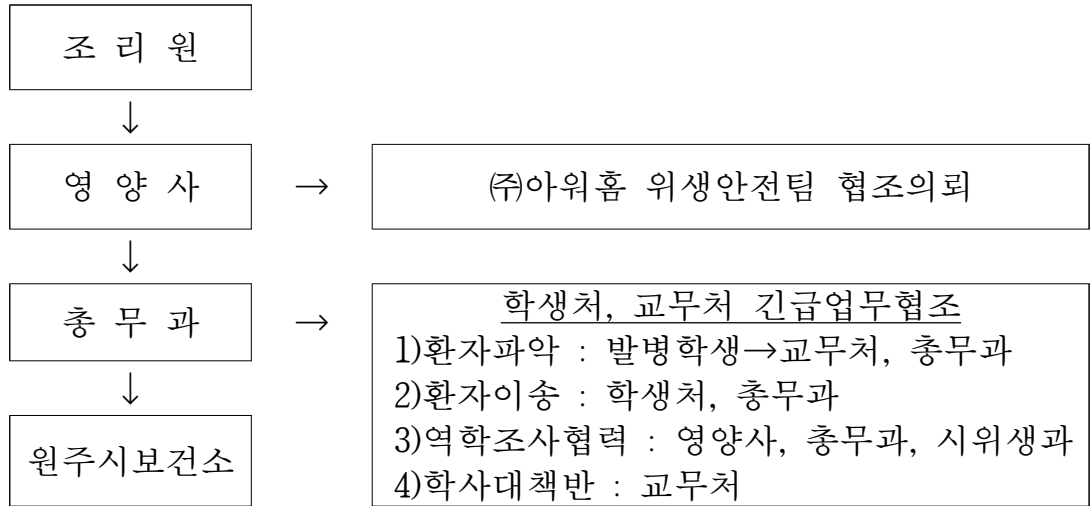


○ 감염병 대유행시 단계별 조치 사항

구분	판단 기준	주요 조치사항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의 신종 감염병 발생 ● 국내의 원인불명 감염환자 발생 ● 대풍·집중호우 발생 기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정보 수집·전파 ● 대응태세 점검 ●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홍보 및 예방교육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 국내에서 신종 감염병 발생 ● 지역별 재출현 감염병 발생 ● 대규모 침수지역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협조체계 가동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지침시달 ● 감염병 확산정보 전파 및 예방활동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2차감염 우려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오리엔테이션, MT 등 단체활동 자제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 ● 국내 신종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재출현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 수인성 감염병의 타 지역으로 전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대책회의 및 협조체계 강화 ● 감염병 예방 및 감시강화 지침 일제 시달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감염 의심자 파악, 가정연계 관리 ●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 오리엔테이션, MT 등 단체활동 금지 ● 방역기관 등 협의하에 휴교/휴업 결정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국내 신종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재출현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 수인성 감염병의 교육기관 확산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합동대응, 대국민담화 발표 등 ● 감염병 발생추세 파악 및 정보전파 ● 환자 및 유증상자 격리 및 치료기관 이송 ● 확산대비 일제 휴업/휴교 검토 및 시달 ● 방역실시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 각종 단체활동 일제 금지

식중독 발생시 대응 체계

가. 평상시 식중독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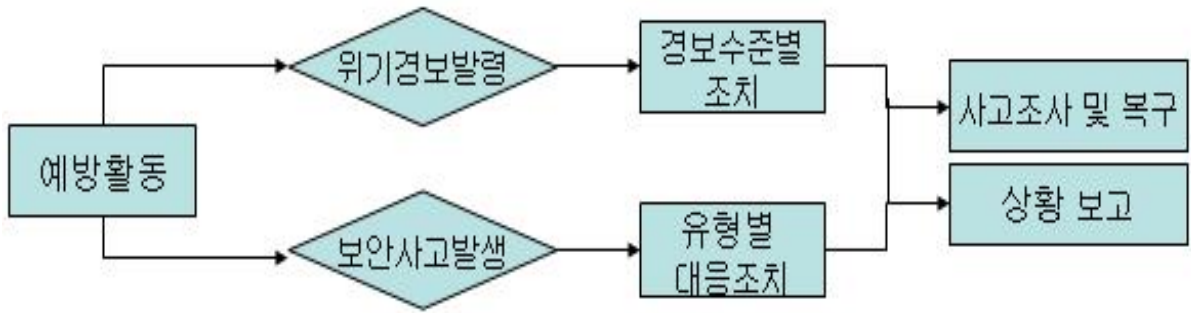


나. 식중독 발생시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관 심 (Blue)	주 의 (Yellow)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10~34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 후의 변화 ●산업체건강학이 잦은 봄·가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35~50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보도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 고 발생 ●일부학교에서 복통·설사환자 발생
대응 전략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식중독 위험 식자재 통제
구분	경 계 (Orange)	심 각 (Red)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51~85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 이상 발생 ●10개 학교 이상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지수 : 85이상 ●집단급식소에서 100명이상 식 중독 발생 ●재학생의 30%이상 설사환자 발 생 ●30개 학교 이상 동시에 식중독 발생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중독 위험 식자재 완전통제 ●식중독 유발 메뉴 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간대별 위생점검 ●배식메뉴 주기적으로 확인 점 검

사이버 공격 발생시 대응 체계

가. 위기관리업무 수행 흐름도



나. 사이버 공격 유형별 대응요령

공격 유형	사이버공격 대응요령
악성코드 공격	공격판단 → 감염시스템 분리 → 감염경로 차단 →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 차단 → 미확인 악성코드 대처 → 사고통보
서비스거부 공격	공격유형 판단 → 공격 추적 및 차단 → 피해시스템 위치 재배치 및 중요자료 백업 → 보안취약점 또는 결함제거 → 사고통보
비인가접근 공격	피해시스템 격리 및 관련서비스 중지 → 로그자료 백업 → 공격에 사용된 계정 제거 → 사고통보
복합구성 공격	사고별 대응요령 나열하고 중요도 판단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공격기법별 대응절차를 수행

다.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절차

